2020 년도 취학 또는 진학·취직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제도 일람

교 토 부

교 토 부 교 육 위 원 회

목 차

머리말 1
교토부원호제도담당기관일람 2
시정촌・시정(조합)교육위원회 일람 3
복지사무소 일람 5
사회복지협의회(상담창구)일람 6

제 1 편 영·유아를 위한 제도 7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8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9
셋째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보조금【면제(보조)】 10
취학장려비【지급】 11

제 2 편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12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13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14

제 3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15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16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17
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부조」「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18
취학원조비【지급】 19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급 등) 【지급】 20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 【지급】 21
사립중학교 등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22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23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24

제 4 편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25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26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27

제 5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28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29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30
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부조」【지급】 31
취학원조비【지급】 32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급 등) 【지급】 33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 【지급】 34
사립중학교 등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35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36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37

제 6 편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38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고등학교등 취학비)」【지급】 39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40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대출】 43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금」【무이자대출】 44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46
고등학생등 수학 지원사업(수학준비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48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금【대출】 50

제 7 편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52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보조(고등학교등 취학비)」【지급】 53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54
장학을 위한 급부금(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 【지급】 57
모자가정장학금등【지급】 58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지급】 59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 【지급】 61
고등학교 학생통학비 보조금【지급】 63
정시제 과정 교과서 및 통신제 과정 교과서・학습서 보조금 65
정시제과정 및 통시제과정 수학장려금 【무이자대출】 66
공립고교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67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69
사립고등학교 안심수학지원사업【수업료감면・학비경감】 71
효고현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72
사립고등학교 전공과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73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교육지원비)」【무이자대출】 74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무이자대출】 75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76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준비금)【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78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80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출】 81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83

제 8 편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84

생활보호법에 의한「진학준비급부금」【지급】.....85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대출】.....86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87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89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출】.....90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93

제 9 편 중학교・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포함)등, 졸업후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95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기능습득비)」【지급】.....96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취업준비비)」【지급】.....97
기능습득자금・입소준비금【지급】.....98
훈련수당・입교준비금【지급】.....99
장애인등 직장적응훈련수당【지급】.....100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업자금」「취업준비자금」【무이자대출】.....101
간호사 등 수학자금【무이자대출】.....102
개호 복지사 등 복지자금【무이자대출】.....103
보육사 수학자금【무이자대출】.....104

참고자료.....105

아동 수당【지급】.....106
아동 부양 수당【지급】.....107
특별 아동 부양 수당【지급】.....108
장애아 복지 수당【지급】.....109
모자복지단체 소액 대출자금【무이자대출】.....110
각제도 교토부청 담당과.....111

머리말

인권존중이 국제적인 큰 흐름이 되고 있는 현재, 교토부에서도 동화문제 등 여러가지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사람 한사람의 존엄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싶다",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이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 되어야 합니다.

교토부에서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취학, 기능취득이나 취업의 실패를 막기 위해 각종의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국헌법 제 97 조에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간에 걸친 자유획득을 향한 노력의 성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배들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희망하는 분은 보호자나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하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의 장래를 향해 한 발 내딛는 것과 함께,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이 책자에 게재되어 있는 제도 외에, 시정촌(市町村) 에서 독자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거주지역 시정촌(市町村) 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각의 제도내용은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하실 때 내용에 관해 문의처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토시는 정령지정도시로써 독자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토시 각 관계기관 또는「교토 이츠데모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 이츠데모 콜센터 TEL 075-661-3755 연중무휴 아침 8 시 ~ 저녁 9 시까지)

교토부 원호제도 담당기관 일람

□교토부청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과	전화번호
교육청지도부 학교교육과	075-414-5831	상공노동관광부 인재확보추진실	075-682-8918
교육청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건강복지부 의료과	075-414-4746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58 075-414-4564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부민환경부 안심・ 안전마치즈쿠리추진과	075-414-5076	건강복지부 어린이・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81
상공노동관광부 인재개발추친과	075-414-5101	교육청지도부 인권교육실	075-414-5822

□지방기관

광역진흥국	보건소	소관 시정촌	교육국
야마시로(山城) 광역진흥국 0774-21-2101	오토쿠니(乙訓)보건소 075-933-1151	무코우시	오토쿠니(乙訓) 교육국 075-933-5130
		나가오카쿄시	
		오오야마자키쵸	
	야마시로북(山城北)보건소 0774-21-2191	우지시※	야마시로(山城) 교육국 0774-62-0008
		조요시※	
		쿠미야마쵸※	
	야마시로북(山城北) 츠즈키(綴喜)지점 0774-63-5745	야와타시	
		쿄타나베시	
		이데쵸	
		우지타와라쵸	
	야마시로남(山城南)보건소 0774-72-4300	기즈가와시	
		카사기쵸	
		와즈카쵸	
		세이카쵸	
		미나미야마시로무라	
난탄(南丹) 광역진흥국 0771-22-0422	난탄(南丹)보건소 0771-62-4751	카메오카시	난탄(南丹)교육국 0771-62-0304
		난탄시	
		쿄탄바쵸	
츄탄(中丹) 광역진흥국 0773-62-2500	츄탄서(中丹西)보건소 0773-22-5744	후쿠치야마시	츄탄(中丹)교육국 0773-42-1200
	츄탄동(中丹東)보건소 0773-75-0805	아야베시	
		마이즈루시	
탄고(丹後) 광역진흥국 0772-62-4301	탄고(丹後)보건소 0772-62-0361	미야즈시	탄고(丹後)교육국 0772-22-2175
		쿄탄고시	
		요사노쵸	
		이네쵸	

※우지(宇治)시, 죠요(城陽)시 및 구미야마쵸(久御山町)에 사는 분의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P.44~46, P.58~60) 및 기능 수득 자금, 입소준비금(P.97)의 담당보건소는 야마시로키타(山城北)보건소 쯔즈키(綴喜)분실입니다.

시정촌・시정(조합)교육원회 일람

시정촌(시청,정・촌사무소)		시정(조합)교육위원회	
무코우 시청	075-931-1111	무코우시 교육위원회	075-931-1111 (시청대표전화)
나가오카교 시청	075-951-2121	나가오카교 교육위원회	075-951-2121 (시청대표전화)
오야마자키쵸 사무소	075-956-2101	오야마자키쵸 교육위원회	075-956-2101 (쵸사무소대표전화)
우지시청	0774-22-3141	우지시 교육위원회	0774-22-3141 (시청대표전화)
조요시청	0774-52-1111	조요시 교육위원회	0774-56-4003
야와타시청	075-983-1111	야와타시 교육위원회	075-983-2088
교타나베시청	0774-63-1122	교타나베시 교육원원회	0774-62-9550
키즈가와시청	0774-72-0501	키즈가와시 교육위원회	0774-75-1230
쿠미야마쵸 사무소	075-631-6111	쿠미야마쵸 교육위원회	075-631-9974
이데쵸사무소	0774-82-2001	이데쵸 교육위원회	0774-82-4333
우지타가라쵸 사무소	0774-88-2250	우지타가라쵸 교육위원회	0774-88-5850
세이카쵸 사무소	0774-94-2004	세이카쵸 교육위원회	0774-95-1906
카사기쵸 사무소	0743-95-2301	소라쿠토부광역연합 교육위원회	0774-78-4335
와츠카쵸 사무소	0774-78-3001		
미나미야마시로무라 사무소	0743-93-0101		
카메오카시청	0771-22-3131	카메오카시 교육위원회	0771-25-5053
난탄시청	0771-68-0001	난탄시 교육위원회	0771-68-0056
쿄탄바쵸사무소	0771-82-0200	교탄바쵸 교육위원회	0771-84-0028
오야베시청	0773-42-3280	오야베시 교육위원회	0773-42-3280 (시청대표전화)
후쿠치야마시청	0773-22-6111	후쿠치야마시 교육위원회	0773-24-7062
마이즈루시청	0773-62-2300	마이즈루시 교육위원회	0773-66-1072
미야즈시청	0772-22-2121	미야즈시 교육위원회	0772-22-2121 (시청대표전화)
쿄탄고시청	0772-69-0001	쿄탄고시 교육위원회	0772-69-0620
이네쵸사무소	0772-32-	이네쵸 교육위원회	0772-32-0718

	0501		
요사노쵸사무소	0772-43-9000	요사노쵸 교육위원회	0772-43-9025
		요사노쵸 미야즈시 중학교연합교육위원회	0772-43-9025
교토시청	075-222-3111	교토시 교육위원회	075-222-3767

복지사무소 일람

사무소명	우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관시정촌
교토부 야마시로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 오토쿠니보건소)	617-0006	向日市上植野町馬立 8	075-933-1154	오야마자키쵸
교토부 야마시로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야마시로북보건소츠즈키분실)	610-0331	京田辺市田辺明田 1	0774-63-5747	쿠미야마쵸 이데쵸 우지타와라쵸
교토부 야마시로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 야마시로남보건소)	619-0214	木津川市木津上戸 18-1	0774-72-0208	카사기쵸,와즈카쵸 세이카쵸,미나미야마시로무라
교토부 난탄광역진흥국 (건강복지부 난탄보건소)	622-0041	南丹市園部町小山東町藤ノ木 21	0771-62-0363	교탄바쵸
교토부 탄고광역진흥국 (보건복지부 탄고보건소)	627-8570	京丹後市峰山町丹波中嶋 855	0772-62-4302	요사노쵸 이네쵸
후쿠치야마시 복지사무소	620-8501	福知山市宇内記 13 の 1	0773-24-7012	후쿠치야마시
마이즈루시 복지사무소	625-8555	舞鶴市字北吸 1044	0773-66-1010	마이즈루시
마이즈루시 복지사무소 (마이즈루시청 서지점)	624-0853	舞鶴市宇南田辺 1	0773-77-2253	
아야베시 복지사무소	623-8501	綾部市若竹町 8 の 1	0773-42-4257	아야베시
우지시 복지사무소	611-8501	宇治市宇治琵琶 33	0774-22-3141	우지시
미야즈시 복지사무소	626-0018	宮津市字本町 789 （宮津市浜町 3012）	0772-45-1623	미야즈시
카메오카시 복지사무소	621-8501	亀岡市安町野々神 8	0771-25-5030	카메오카시
조요시 복지사무소	610-0195	城陽市寺田東ノロ 16・17	0774-56-4034	조요시
무코우시 복지사무소	617-8665	向日市寺戸町中野 20	075-931-1111	무코우시
나가오카교시 복지사무소	617-8501	長岡京市開田 1 丁目 1 の 1	075-955-9517	나가오카교시
야와타시 복지사무소	614-8093	八幡市三本橋 59 の 9	075-983-1111	야와타시
쿄타나베시 복지사무소	610-0393	京田辺市田辺 80	0774-63-1122	쿄타나베시
쿄탄고시 복지사무소	627-0012	京丹後市峰山町杉谷 691	0772-69-0310	쿄탄고시
난탄시 복지사무소	622-8651	南丹市園部町小桜町 47	0771-68-0007	난탄시
키즈가와시 복지사무소	619-0286	木津川市木津南垣外 110 の 9	0774-79-0307	키즈가와시
키타 복지사무소	603-8511	京都市北区紫野東御所田町 33 - 1	075-432-1181 （대표전화）	키타구
가미교 복지사무소	602-8511	京都市上京区今出川通室町西入堀出シ町 285	075-441-0111 （대표전화）	가미교구
사쿄 복지사무소	606-8511	京都市左京区松ヶ崎堂ノ上町 7 の 2	075-702-1000 （대표전화）	사쿄구
나카교 복지사무소	604-8588	京都市中京区西堀川通御池下る西三坊堀川町 521	075-812-0061 （대표전화）	나카교구
히가시야마 복지사무소	605-0862	京都市東山区清水五丁目 130 の 8	075-561-1191 （대표전화）	히가시야마구
야마시나 복지사무소	607-8511	京都市山科区椥辻池尻町 14 の 2	075-592-3050 （대표전화）	야마시나구
시모교 복지사무소	600-8588	京都市下京区西洞院通塩小路上る東塩小路町 608 の 8	075-371-7101 （대표전화）	시모교구
미나미 복지사무소	601-8511	京都市南区西九条南田町 1 の 3	075-681-3111 （대표전화）	미나미구
우쿄 복지사무소	616-8511	京都市右京区太秦下刑部町 12	075-861-1101 （대표전화）	우쿄구
니시쿄 복지사무소	615-8522	京都市西京区上桂森下町 25 の 1	075-381-7121 （대표전화）	니시쿄구
라쿠사이 복지사무소	610-1143	京都市西京区大原野東境谷町二丁目 1 の 2	075-332-8111 （대표전화）	니시쿄구
후시미 복지사무소	612-8511	京都市伏見区鷹匠町 39 の 2	075-611-1101 （대표전화）	후시미구
후카쿠사 복지사무소	612-0861	京都市伏見区深草向畑町 93 の 1	075-642-3101 （대표전화）	후시미구
다이고 복지사무소	601-1366	京都市伏見区醍醐大構町 28	075-571-0003 （대표전화）	후시미구

사회복지협의회(상담창구)일람

사협명	우편번호	사협소재지	전화번호

키타구		603-8143	北区小山上総町 3	075-441-1900
가미교구		602-8247	上京区今出川通室町西入堀出シ町 285　上京区総合庁舎２階	075-432-9535
사쿄구		606-8103	左京区高野西開町 5　左京合同福祉センター内	075-723-5666
나카교구		604-8316	中京区大宮通御池下ル三坊大宮町 121-2　中京区地域福祉センター	075-822-1011
히가시야마구		605-0863	東山区五条通大和大路東入ル 5 丁目梅林町 576-5 「やすらぎ･ふれあい館」内	075-551-4849
야마시나구		607-8344	山科区西野大手先町 2-1　山科総合福祉会館内	075-593-1294
시모교구		600-8166	下京区花屋町通室町西入ル乾町 292　下京総合福祉センター内	075-361-1881
미나미구		601-8321	南区吉祥院西定成町 32　南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5-671-0709
우쿄구		616-8105	右京区太秦森ケ前町 22-3　右京合同福祉センター内	075-865-1150
니시쿄구		615-8083	西京区桂艮町 23-4	075-394-5711
후시미구		612-8318	伏見区紙子屋町 544　伏見社会福祉総合センター内	075-604-6541
후시미구・다이고지점		601-1375	伏見区醍醐高畑町 30-1　パセオダイゴロー西館 京都市醍醐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5-575-2070
후쿠치야마시		620-0035	福知山市字内記 10 番地の 18　福知山市総合福祉会館内	0773-25-3211
마이즈루시		625-0087	舞鶴市字余部下 1167　舞鶴市中総合会館内	0773-62-7044
아야베시		623-0012	綾部市川糸町南古屋敷 5-1　綾部市福祉ホール内	0773-43-2881
우지시		611-0021	宇治市宇治琵琶 45　宇治市総合福祉会館内	0774-22-5650
미야즈시		626-0041	宮津市字鶴賀 2085　宮津市福祉センター内	0772-22-2090
카메오카시		621-0806	亀岡市余部町樋又 61-1　ガレリアかめおかふれあいプラザ内	0771-23-6711
조요시		610-0121	城陽市寺田東ノ口 17　城陽市立福祉センター内	0774-56-0909
무코우시		617-0002	向日市寺戸町西野辺 1-7　向日市福祉会館内	075-932-1961
나가오카교시		617-0833	長岡京市神足 2 丁目 3 番 1 号　長岡京市総合生活支援センター	050-7105-8508
야와타시		614-8022	八幡市八幡東浦 5 番地　八幡市立福祉会館内	075-983-4450
쿄타나베시		610-0332	京田辺市興戸犬伏 5-8　京田辺市社会福祉センター内	0774-62-2222
쿄탄고시		627-0111	京丹後市弥栄町溝谷 3464　京丹後市弥栄庁舎内	0772-65-2100
난탄시		629-0301	南丹市日吉町保野田垣ノ内 11 番地	0771-72-3220
키즈가와시		619-0214	木津川市木津川端 19　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74-71-9559
오야마자키쵸		618-0091	大山崎町字円明寺小字百々10-2　福祉センター「なごみの郷」内	075-957-4100
쿠미야마쵸		613-0043	久御山町大字島田小字ミスノ 11　地域福祉センター「さつき苑」内	075-631-0022
이데쵸		610-0302	井手町大字井手小字東前田 23 番地　老人福祉センター「玉泉苑」内	0774-82-3499
우지타와라쵸		610-0252	宇治田原町大字荒木小字天皇 2　老人福祉センター「やすらぎ荘」内	0774-88-3294
카사기쵸		619-1303	笠置町大字笠置小字西通 90-1　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43-95-2750
와즈카쵸		619-1212	和束町大字釜塚小字生水 15　社会福祉センター内	0774-78-3312
세이카쵸		619-0243	精華町大字南稲八妻小字砂留 22-1　地域福祉センター「かしのき苑」	0774-94-4573
미나미야마시로무라		619-1411	南山城村大字北大河原小字大稲葉 4　南山城村保健福祉センター内	0743-93-1201
쿄탄바쵸		622-0311	京丹波町和田田中 6-1　瑞穂保健福祉センター内	0771-86-1440
이네쵸		626-0413	伊根町字泊 1　伊根町老人福祉センター「泊泉苑」内	0772-32-0176
요사노쵸		629-2311	与謝野町字幾地 908　野田川老人憩の家内	0772-43-0294
후쿠치야마시 지점	미와지점	620-1442	福知山市三和町千束 515 番地　시청 미와지점내	0773-58-3713
	야쿠노지점	629-1322	福知山市夜久野町平野 1030 番地　ふれあいの里福祉センター内	0773-38-1200
	오에지점	620-0305	福知山市大江町波美 235 番地　老人福祉センター舟越会館内	0773-56-0224
교탄고시 지점	미네야마지점	627-0012	京丹後市峰山町杉谷 691	0772-62-4128
	오오미야지점	629-2501	京丹後市大宮町口大野 140　京丹後市大宮福祉会館内	0772-64-2037
	아미노지점	629-3101	京丹後市網野町網野 385-1　京丹後市網野健康福祉センター内	0772-72-0797
	탄고지점	627-0201	京丹後市丹後町間人 545-1　京丹後市丹後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72-75-0808
	쿠미하마지점	629-3405	京丹後市久美浜町 814　京丹後市久美浜庁舎内	0772-82-0008
난탄시 사무소	소노베사무소	622-0014	南丹市園部町上本町南 2 番地 22　南丹市園部公民館内	0771-62-4125
	야기사무소	629-0134	南丹市八木町西田山崎 17 番地　南丹市八木デイサービスセンター内	0771-42-5480
	히요시사무소	629-0301	南丹市日吉町保野田垣ノ内 6 番地 4	0771-72-0947
	미야마사무소	601-0751	南丹市美山町安掛下 8 番地　南丹市美山保健福祉センター内	0771-75-0020
키즈가와시 지점	야마시로지점	619-0204	木津川市山城町椿井北代 102 番地　山城保健センター内	0774-86-4151
	키즈지점	619-0214	木津川市木津川端 19 番地　木津老人福祉センター内	0774-72-5532
	카모지점	619-1127	木津川市南加茂台 6 丁目 3 番地　加茂ふれあいセンター内	0774-76-4338
교탄바쵸지점	탄바지점	622-0213	京丹波町須知鍋倉 1 番地 1　丹波福祉センター内	0771-82-0126
	미즈호지점	622-0311	京丹波町和田田中 6 番地 1　京丹波町瑞穂保健福祉センター内	0771-86-1440
	와치지점	629-1121	京丹波町本庄今福 13　高齢者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内	0771-84-1833
요사노쵸지점	카야지점	629-2403	与謝野町字加悦 433 番地 5　요사노쵸 상공회 카야지점내	0772-42-7553
	이와타기지점	629-2262	与謝野町字岩滝 2272 番地 1　岩滝ふれあいセンター内	0772-46-5556
	노다가와지점	629-2311	与謝野町字幾地 908 番地　野田川老人憩の家内	0772-43-0294
교토시		600-8127	下京区西木屋町通上ノ口上ル梅湊町 83-1 「ひと･まち交流館京都」内	075-354-8734
교토부		604-0874	中京区竹屋町通烏丸東入ル清水町 375　京都府立総合社会福祉会館内 5 階	075-252-6293

제 1 편　영 · 유아를 위한 제도

영・유아를 위한 제도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table>
<tr><td>내 용</td><td>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아동의 부양을 하고 있을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영유아를 부양하고 있는 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P.9)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동 1 인에 대해 연액 11,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이 있었을 시, 또는 년도중도에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었을 경우는 월액으로 지급합니다.)</td></tr>
<tr><td>신청기간
및
지급시기</td><td>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의 4 월 1 일
현재,지급대상자</td><td>4 ~ 5 월</td><td>4 ~ 3 月</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의 4 월 2 일
이후,지급대상자</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able>
</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한부모가정 복지 추진원 또는 민생위원・아동위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 거주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부(府)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 (교토시를 제외함) 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영・유아를 위한 제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table>
<tr><td>내 용</td><td>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영유아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에 거주하고,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를 잃은 영유아
※모자가정장학금 (P.8) 의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동 1 인에 대해 연액 11,000 엔
(6 월 1 일 이후에 신청하거나 혹은 연도 도중에 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월할 지급합니다.)</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4 월 ~ 5 월말일
이후는 수시접수 (최종기한 : 2 월말)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신청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able></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①,②의 증명을 발급받은 후 , 부(府)광역진흥국 또는,교토부청 부민(府民)생활부 안심 ・ 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사망신고서 (사본) 또는 교통사고증명서(사본)의 첨부가 있는 경우는 불요합니다.)
② 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부민(府 民) 환 경 부
안 심 ・ 안 전 마 치 즈 쿠 리 추 진 과 (TEL075-414-5076) 로 문의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영・유아를 위한 제도

셋째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보조금【면제(보조)】

내 용	보육소, 유치원 등에 입소, 입원하는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를 면제(보조)합니다. ※부(府)가 보호자 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이후의 유치원, 보육원 등의 보육로 면제를 시행하는 시정촌(市町村)에 면제액의 1/2 을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다음 ①,②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분 ① 만 18 세 미만의 자녀(단, 18 세가 되는 날 이후 첫 해 말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를 3 명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이고, 셋째 이후 자녀를 보육소, 유치원 등에 입소, 입원시키고 있는 분 ② 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따라서는 위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시정촌(市町村)에 문위해 주십시오.
면제액	셋째 이후 보육료 전액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거주 시정촌(市町村)(P.3)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유아를 위한 제도

취학장려비【지급】

<table>
<tr><td>내 용</td><td>특별지원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유치부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td></tr>
<tr><td>지급액</td><td>
<table>
<tr><th colspan="3">구 분 ※</th><th>Ⅰ</th><th>Ⅱ</th><th>Ⅲ</th></tr>
<tr><td colspan="3">학교급식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d>-</td></tr>
<tr><td rowspan="5">교통비</td><td rowspan="2">통학비</td><td>본인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보조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 rowspan="2">귀성비
39 왕복분</td><td>본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보조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 colspan="2">교류 및 공동학습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r>
<tr><td colspan="2" rowspan="3">기숙사 거주에 따른 경비</td><td>침구구입비</td><td>5,510 엔</td><td>2,755 엔</td><td>-</td></tr>
<tr><td>일용품등구입비</td><td>141,560 엔</td><td>70,780 엔</td><td>-</td></tr>
<tr><td>식비</td><td>156,210 엔</td><td>78,105 엔</td><td>-</td></tr>
<tr><td rowspan="2">수학여행비</td><td rowspan="2">교외활동등 참가비</td><td>본인 경비</td><td>1,600 엔</td><td>800 엔</td><td>-</td></tr>
<tr><td>보조인 경비</td><td>2,390 엔</td><td>1,195 엔</td><td>-</td></tr>
<tr><td colspan="3">학용품등 구입비</td><td>8,680 엔</td><td>4,340 엔</td><td>-</td></tr>
</table>
○대상이 되는 경비와 보조한도액
※ 표 안의 구분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학교에 따라 상이합니다.</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TEL075-414-5835) 로 문의 해 주십시오.</td></tr>
<tr><td>비 고</td><td>※금액은 2020 년도 기준입니다.</td></tr>
</table>

제 2 편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부조 (일시부조) 」【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의 자녀가 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초등부를 포함. 이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함.)에 입학을 준비할 때 필요한 비용(학생복, 가방, 신발 등 구입비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의 자녀로 다음 해 초등학교 에 입학하는 분</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생활부조 (일시부조) 」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지급액</th></tr>
<tr><td>입학준비금</td><td>입학시의 학생복, 란도세루, 가방, 신발 등</td><td>64,300 엔 이내</td></tr>
</table>
【참고】입학준비금 외에 생활보호법의「교육부조」(P.18) 로써 아래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준액</th></tr>
<tr><td>기준액</td><td>【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서도도구,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등의 구입비</td><td>【그외교재비】교외활동비,통학용신발,실내화,모자등 통학용품등의 구입비</td><td>월액 2,600 엔</td></tr>
<tr><td>학급비등</td><td colspan="2">학급비, 아동회비, PTA 회비 등</td><td>월액 850 엔 이내</td></tr>
<tr><td>교재비</td><td colspan="2">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td><td>실비지급</td></tr>
<tr><td>학교급식비</td><td colspan="2">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td><td>실비지급</td></tr>
<tr><td>교외활동참가비</td><td colspan="2">숙박비,시설이용료,교통비 등</td><td>실비지급</td></tr>
<tr><td>통학교통비</td><td colspan="2">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td><td>실비지급</td></tr>
<tr><td>학습지원비</td><td colspan="2">과외클럽활동비</td><td>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16,000 엔 이내)</td></tr>
</table></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해 주십시오.</td></tr>
<tr><td>비 고</td><td>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21) 지급을 받고 계시는 분은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 에 입학했을 때에 필요한 의복, 신발등의 구입비용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혹은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다음 해 초등학교(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에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대출액	아동 1 인 당 63,100 엔 이내
신청시기	입학전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차용서 제출이 확인 된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이역의 부(府)보건소 (P. 2) 에 상담 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 ~ ⑦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 해 주십시요. ① 취학통지서 및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③ 세대전원의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④ 인감등록증명서 ⑤ 부양 사실에 관한 증명서 ⑥ 소득증명서류 ⑦ 소정의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 해 주십시요.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3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table>
<tr><td>내 용</td><td>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 초등학생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P.17)등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동 1 인당 연액 21,5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 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able>
</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한부모가정 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위원 · 아동위원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거주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부(府)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시를 제외함) 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지역의 부(府)보건소(P.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table>
<tr><td>내 용</td><td>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초등학생(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초등학생(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
※모자가정장학금 (P.16) 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동 1 인 당 연액 21,5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지급 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4 월 ~ 5 월말일
이후 수시접수 (최종기한 : 2 월말)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月</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able></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 ~ ③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부(府)광역진흥국 또는, 교토부청 부민(府民)생활부 안심 ・ 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 해 주십시요.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사망신고서 (사본) 및
교통사고증명서 (사본) 의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 학교장의 증명(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 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통학용품의 구입비,학교급식비 등) 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초등학생 (의무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포함)</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교육부조」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준액</th></tr>
<tr><td>기준액</td><td>【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서도도구,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등의 구입비</td><td>【그외교재비】교외활동비,통학용신발,실내화,모자등 통학용품등의 구입비</td><td>월액 2,600 엔</td></tr>
<tr><td>학급비 등</td><td colspan="2">학급비, 아동회비, PTA 회비 등</td><td>월액 850 엔 이내</td></tr>
<tr><td>교재비</td><td colspan="2">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td><td>실비지급</td></tr>
<tr><td>학교급식비</td><td colspan="2">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td><td>실비지급</td></tr>
<tr><td>교외활동참가비</td><td colspan="2">숙박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td><td>실비지급</td></tr>
<tr><td>통학교통비</td><td colspan="2">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td><td>실비지급</td></tr>
<tr><td>학습지원비</td><td colspan="2">과외클럽활동비등</td><td>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16,000 엔 이내)</td></tr>
</table>
○생활보호법「생활부조 (일시부조) 」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지급액</th></tr>
<tr><td>피복비</td><td>제 4 학년 진급시 교복비등</td><td>14,000 엔 이내</td></tr>
</table>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비 (P.19)
수학여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원조금 (P.23) 로 각각 신청 해 주십시요.</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해 주십시요.</td></tr>
<tr><td>비 고</td><td>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21) 지급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구분에 의해 지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취학원조비【지급】

내 용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초등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비등 일부를 원조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 생활보호 수급을 받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
지급액	**※지급항목, 지급액은 시정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요보호자 수학여행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P.18）」급부 이외의 것)** 2 준요보호자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활동비, 통학비, 수학여행비, 의료비, 학교급식비, 등 주 : 의료비・・・학교보건안전법이 정한 질병 (학교병) 을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신청시기	연초 (연도중의 경우는 수시) 시정촌(市町村)및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거주지역의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P.3)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급 등) 【지급】

<table>
<tr><td>내 용</td><td>초등학교 특별지원학급으로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 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 해당하는 아동 또는 특별지원학급에 취학하는 아동
※생활보호법에 의거한「교육부조」(P.22)、취학원조비(P.23)를 수급하는 경우는 일부 경비만 대상이 됩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래의 지급액은 국가가 정한 단가 (2020 년도 기준) 이며, 지급항목 및 지급액은 시정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상경비 및 보조한도액
<table>
<tr><th>구 분 ※</th><th>Ⅰ・Ⅱ</th><th>Ⅲ</th></tr>
<tr><td>학교급식비</td><td>실비의 1 / 2</td><td>-</td></tr>
<tr><td>통학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r>
<tr><td>교류 및 공동학습교통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r>
<tr><td>수학여행비</td><td>10,790 엔</td><td>-</td></tr>
<tr><td>숙박을 포함하지 않는 교외활동등 참가비</td><td>800 엔</td><td>-</td></tr>
<tr><td>숙박을 포함하는 교외활동등 참가비</td><td>1,845 엔</td><td>-</td></tr>
<tr><td>학용품등 구입비</td><td>5,820 엔</td><td>-</td></tr>
<tr><td>신입학아동 학용품비 등</td><td>25,555 엔</td><td>-</td></tr>
<tr><td>체육실기용구비 (스키 등)</td><td>13,255 엔</td><td>-</td></tr>
<tr><td>확대 교재비</td><td>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 (한권당 한도 5,250 엔)</td><td>-</td></tr>
</table>
※ 표 구분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시정촌(市町村)에 따라 상이합니다.</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요.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릅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P.3)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특별지원학교 (소학부) 아동을 위한 제도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지급】

<table>
<tr><td>내 용</td><td>특별지원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소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아동</td></tr>
<tr><td>지급액</td><td>○대상경비 및 보조한도액
<table>
<tr><td colspan="3">구 분 ※1</td><td>Ⅰ</td><td>Ⅱ</td><td>Ⅲ</td></tr>
<tr><td colspan="3">학교급식비</td><td>실비</td><td>실비의 1 / 2</td><td>-</td></tr>
<tr><td rowspan="5">교통비</td><td rowspan="2">통학비</td><td>본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보조인 경비</td><td colspan="3">1 ~ 3 학년 실비
4 ~ 6 학년※2 실비</td></tr>
<tr><td>귀성비
39 왕복분</td><td>본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td><td>보조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 colspan="2">교류 및 공동학습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의 1 / 2</td></tr>
<tr><td colspan="2" rowspan="3">기숙사 거주에 의한 경비</td><td>침구구입비</td><td>5,510 엔</td><td>2,755 엔</td><td>-</td></tr>
<tr><td>일용품등 구입비</td><td>141,560 엔</td><td>70,780 엔</td><td>-</td></tr>
<tr><td>식비</td><td>148,850 엔</td><td>74,425 엔</td><td>-</td></tr>
<tr><td rowspan="4">수학여행비</td><td rowspan="2">수학여행비</td><td>본인 경비</td><td>21,580 엔</td><td>10,790 엔</td><td>-</td></tr>
<tr><td>보조인 경비
※3</td><td>33,730 엔</td><td>16,865 엔</td><td>-</td></tr>
<tr><td rowspan="2">교외활동등 참가비</td><td>본인 경비</td><td>18,580 엔</td><td>9,290 엔</td><td>-</td></tr>
<tr><td>보조인 경비</td><td>1 ~ 3 학년
27,870 엔
4 ~ 6 학년※2
27,870 엔</td><td>1 ~ 3 학년
13,935 엔
4 ~ 6 학년※2
13,935 엔</td><td>-</td></tr>
<tr><td colspan="3">학용품 등 구입비</td><td>11,640 엔</td><td>5,820 엔</td><td>-</td></tr>
<tr><td colspan="3">확대교재비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 산정한 액</td><td>한 권당 한도
10,500 엔</td><td>Ⅰ의 1 / 2</td><td>-</td></tr>
<tr><td colspan="3">신입학아동・생도 학용품비 등</td><td>51,110 엔</td><td>25,555 엔</td><td>-</td></tr>
</table>
※1 표 구분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2 4~6 학년의 통학비 보조인 경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보조인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중복장애아동의 보조인 입니다.
※3 수학여행비 보조인 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중복장애아동의 보조인 입니다.</td></tr>
<tr><td>신청시기및 지급시기</td><td>학교에 따라 다릅니다.</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TEL075-414-5835)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2020 년 기준입니다.</td></tr>
</table>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사립중학교 등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초등학교 등에 재적하는 아동 수업료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연수입 400 만엔 미만 정도의 세대 자녀이며 사립초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분 ※연수입은 기준이며, 가족의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는 신청서류에서 확인해주십시오.
지급액	연액 100,000 엔
신청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학교로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학교가 지정한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매년 수속이 필요합니다. 별도, 설문조사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초등학생이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가방,내의,신발,양말 등) 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분
지급액	아동 1 인당 5,8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시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제출해 주십시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사업 (P.19) 으로 신청해주십시요.

초급학교생을 위한 제도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자녀에게 수학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학교급식비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 한 초급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의 수학을 위한 비용 부담을 필요로 하는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의 교육부조등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생활보호의료 담당) (TEL075-414-4557 또는 4564)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4 편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부조(일시부조)」【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중학교(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 중학부 및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보호 실시기관이 취학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포함.이 페이지에 대해서 동일함。)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 (교복 ・ 가방 ・ 신발 등의 구입비) 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다음 해 중학교 에 입학하는 분</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의「생활부조 (일시부조) 」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지급액</th></tr>
<tr><td>입학준비금</td><td>입학시 교복, 가방, 신발 등</td><td>81,000 엔 이내</td></tr>
</table>
【참고】입학준비금 이외에 생활보호법「교육부조」(P.35) 에서 아래의 경비가 지급됩니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준액</th></tr>
<tr><td>기준액</td><td>【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정규,서도도구,바느질도구,체육용 신발등 구입비</td><td>【그외 교재비】교외활동비,통학용신발,실내화,모자등 통학용품 등 구입비</td><td>월액 5,100 엔</td></tr>
<tr><td>학급비 등</td><td colspan="2">학급비, 학생회비, PTA 회비 등</td><td>월액 770 엔이내</td></tr>
<tr><td>교재비</td><td colspan="2">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td><td>실비지급</td></tr>
<tr><td>학교급식비</td><td colspan="2">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td><td>실비지급</td></tr>
<tr><td>교외활동참가비</td><td colspan="2">숙바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td><td>실비지급</td></tr>
<tr><td>통학교통비</td><td colspan="2">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td><td>실비지급</td></tr>
<tr><td>학습지원비</td><td colspan="2">과외클럽활동비등</td><td>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59,800 엔 이내)</td></tr>
</table></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34)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구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지원자금」【무이자 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중학교(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에 입학시에 필요로 하는 의복, 신발등의 구입비용을 빌려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또는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다음해 중학교(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에 입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대출액	아동 한명당 79,500 엔 이내
신청시기	입학전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차용서의 제출이 확인된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전에 반드시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 ~ ⑦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해 주십시요. ① 취학통지서 및 필요경비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③ 세대전원의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④ 인감등록증명서 ⑤ 부양 사실에 관한 증명서 ⑥ 소득증명서류 ⑦ 소정의 서약서 및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이역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5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중학생을 위한 제도

모자가정 장학금【지급】

<table>
<tr><td>내 용</td><td>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 중학생(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P.30) 을 받고 있는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동 1 인당 연액 43,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able>
</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한부모가정 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부(府)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시를 제외함) 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중학생을 위한 제도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table>
<tr><td>내 용</td><td>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중학생(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중학생(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포함)
※모자가정장학금 (P.29) 의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자 외</td></tr>
<tr><td>지급액</td><td>아동 1 인 당 연액 43,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시,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지급이 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4 월 ~ 5 월말일 이후는 수시접수 (최종기한 : 2 월말일)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月</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able></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 ~ ③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부(府)광역진흥국 또는, 교토부청 부민(府民)생활부 안심 · 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 해 주십시요.
① 민생위원 · 아동위원의 증명(사망신고서 (사본) 및 교통사고증명서 (사본) 의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②학교장의 증명(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 · 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사항은교토부청민(府民)환경부 안심 · 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중학생을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학용품 ・ 통학용품의 구입비,학교급식비 등) 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중학생 (의무교육학교 후기과정,특별지원학교 중학부 및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보호 실시기관이 취학을 인정한 경우에 한함.) 포함)</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교육부조」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준액</th></tr>
<tr><td>기준액</td><td>【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서도도구,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등의 구입비</td><td>【그외교재비】교외활동비,통학용신발,실내화,모자등 통학용품등의 구입비</td><td>월액 5,100 엔</td></tr>
<tr><td>학급비 등</td><td colspan="2">학급비, 학생회비, PTA 회비 등</td><td>월액 770 엔 이내</td></tr>
<tr><td>교재비</td><td colspan="2">정규 교재로써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것 (부교과서 도서, 워크북, 일영사전, 악기) 의 구입비</td><td>실비지급</td></tr>
<tr><td>학교급식비</td><td colspan="2">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td><td>실비지급</td></tr>
<tr><td>교외활동참가비</td><td colspan="2">숙박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등</td><td>실비지급</td></tr>
<tr><td>통학교통비</td><td colspan="2">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금액</td><td>실비지급</td></tr>
<tr><td>학습지원비</td><td colspan="2">과외클럽활동비등</td><td>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59,800 엔 이내)</td></tr>
</table>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비 (P.32)
수학여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수학여행원조금 (P.36) 에서 각각 신청 해 주십시요.</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해 주십시요.</td></tr>
<tr><td>비 고</td><td>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34) 지급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구분에 의해 지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제도

취학원조비【지급】

내 용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중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용품비등 일부를 원조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 수급세대 생활보호 수급을 받지 않으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세대
지급액	**※지급항목, 지급액은 시정촌에 따라 상이합니다.** 1 요보호자 수학여행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 (P.39) 」급부 이외의 것)** 2 준요보호자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교외활동비, 통학비, 수학여행비, 의료비, 학교급식비 등 주 : 의료비 ・・・ 학교보건안전법이 정한 질병 (학교병) 을 치료하기 위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만
신청시기	시정촌(市町村)및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또는 거주 지역의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P.3)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중학생을 위한 제도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급 등)【지급】

<table>
<tr><td>내 용</td><td>중학교 특별지원학급등으로의 취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학교교육법 시행령 제 22 조 3 에서 규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특별지원학급에 취학하는 학생
※생활보호법에 의한 「교육부조」(P.31)、취학원조비 (P.36) 를 수급하는 경우는 일부 경비만 대상이 됩니다.</td></tr>
<tr><td>지급액</td><td>아래의 지급액은 국가가 정한 단가 (2020 년도 기준) 이며, 지급항목 및 지급액은 시정촌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상 경비 및 보조한도액
<table>
<tr><th colspan="2">구 분 ※</th><th>Ⅰ・Ⅱ</th><th>Ⅲ</th></tr>
<tr><td colspan="2">학교급식비</td><td>실비의 1 / 2</td><td>-</td></tr>
<tr><td colspan="2">통학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r>
<tr><td colspan="2">직장실습교통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r>
<tr><td colspan="2">교류 및 공동학습 교통비</td><td>실비</td><td>실비의 1/2</td></tr>
<tr><td colspan="2">수학여행비</td><td>28,860 엔</td><td>-</td></tr>
<tr><td colspan="2">숙박 비포함 교외활동등 참가비</td><td>1,155 엔</td><td>-</td></tr>
<tr><td colspan="2">숙박 포함 교외활동등 참가비</td><td>3,105 엔</td><td>-</td></tr>
<tr><td colspan="2">학용품등 구입비</td><td>11,370 엔</td><td>-</td></tr>
<tr><td colspan="2">신입학아동 학용품비 등</td><td>28,990 엔</td><td>-</td></tr>
<tr><td rowspan="3">체육실기용구비</td><td>유도</td><td>3,825 엔</td><td rowspan="3">-</td></tr>
<tr><td>검도</td><td>26,455 엔</td></tr>
<tr><td>스키 등</td><td>19,015 엔</td></tr>
<tr><td colspan="2">확대교재비</td><td>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서 산정한 액수의 1/2 (한권당 한도 5,250 엔)</td><td>-</td></tr>
</table>
※ 표 구분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시정촌(市町村) 등에 따라 다릅니다.</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요.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시정촌(市町村) 등에 따라 다릅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시정(市町)(조합)교육위원회 등 (P.3)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학생을 위한 제도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지급】

<table>
<tr><td>내 용</td><td>특별지원학교에 취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중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td></tr>
<tr><td>지급액</td><td>○대상경비 및 보조한도액
<table>
<tr><td colspan="3">구 분 ※1</td><td>Ⅰ</td><td>Ⅱ</td><td>Ⅲ</td></tr>
<tr><td colspan="3">학교급식비</td><td>실비</td><td>실비의 1 / 2</td><td>-</td></tr>
<tr><td rowspan="6">교통비</td><td rowspan="2">통학비</td><td>본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보조인 경비</td><td>실비 ※2</td><td>실비 ※2</td><td>실비 ※2</td></tr>
<tr><td rowspan="2">귀성비
39 왕복분</td><td>본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보조인 경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td></tr>
<tr><td colspan="2">교류 및 공동학습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의 1 / 2</td></tr>
<tr><td colspan="2">교류 및 공동학습비</td><td>실비</td><td>실비</td><td>실비의 1 / 2</td></tr>
<tr><td colspan="2" rowspan="3">기숙사 거주에 의한 경비</td><td>침구구입비</td><td>5,510 엔</td><td>2,755 엔</td><td>-</td></tr>
<tr><td>일용품등 구입비</td><td>141,560 엔</td><td>70,780 엔</td><td>-</td></tr>
<tr><td>식비</td><td>148,850 엔</td><td>74,425 엔</td><td>-</td></tr>
<tr><td rowspan="4">수학여행비</td><td rowspan="2">수학여행비</td><td>본인 경비</td><td>57,720 엔</td><td>28,860 엔</td><td>-</td></tr>
<tr><td>보조인 경비</td><td>82,850 엔 ※2</td><td>41,425 엔 ※2</td><td>-</td></tr>
<tr><td rowspan="2">교외활동등 참가비</td><td>본인 경비</td><td>24,660 엔</td><td>12,330 엔</td><td>-</td></tr>
<tr><td>보조인 경비</td><td>36,980 엔 ※2</td><td>18,490 엔 ※2</td><td>-</td></tr>
<tr><td colspan="3">학용품 등 구입비</td><td>22,740 엔</td><td>11,370 엔</td><td>-</td></tr>
<tr><td colspan="3">확대교재비
1 페이지당 42 엔을 한도로 산정한 액</td><td>한 권당 한도
10,500 엔</td><td>Ⅰ의 1 / 2</td><td>-</td></tr>
<tr><td colspan="3">신입학아동・생도 학용품비 등</td><td>57,980 엔</td><td>28,990 엔</td><td>-</td></tr>
</table>
※1 표 구분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통학비 보조인 경비, 수학여행비 보조인 경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보조인 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중복장애아동의 보조인입니다.</td></tr>
<tr><td>신청시기및
지급시기</td><td>학교에 따라 다릅니다.</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TEL075-414-5835)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2020 년 기준입니다.</td></tr>
</table>

중학생을 위한 제도

사립중학교 등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중학교 등에 재적하는 아동 수업료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연수입 400 만엔 미만 정도의 세대 자녀이며 사립중학교 등에 재학하는 분 ※연수입은 기준이며, 가족의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상세는 신청서류에서 확인해주십시오.
지급액	연액 100,000 엔
신청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학교로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학교가 지정한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득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는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에 문의해 주십시오.
비 고	매년 수속이 필요합니다. 별도, 설문조사에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중학생을 위한 제도

수학여행 원조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중학생이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가방,내의,신발,양말 등) 의 구입비용을 부담하는 분
지급액	학생 1 인당 6,8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시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제출해 주십시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취학원조비 (P.32) 로 신청해주십시오.

중급학교생을 위한 제도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을 받고 있는 일본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자녀에게 수학에 필요한 비용 (학용품비, 통학용품비, 학교급식비등) 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수급세대로, 학교법인 교토조선학원이 설치 한 중급학교에 통학하는 자녀의 수학을 위한 비용 부담을 필요로 하는 분
지급액	생활보호법의 교육부조등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 해 주십시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생활보호의료 담당) (TEL 075-414-4557 또는 4564) 로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 6 편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 」【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에게 고등학교 등 취학에 필요한 비용(학용품・교복・가방・신발의 구입비, 수험(검)료・입학금 등) 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 수급 세대의 자녀로 다음 해 고등학교 등에 취학 하는 분
※고등학교 등
① 고등학교 (전일제・정시제・통신제)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고등전문고교
④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별과 제외)
⑤ 고등학교 등에서 취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수업 연한이 3 년 이상이며 보통교육과목을 포함한 취업시간이 약 800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인 경우)</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생업부조」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준액</th></tr>
<tr><td>기준액</td><td>【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정규,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구입비</td><td>【그외】
교외활동비,
통학용품등 구입비</td><td>월액 5,300 엔</td></tr>
<tr><td>학급비</td><td colspan="2">학급비, 학생회비,PTA 회비 등</td><td>월액 1,780 엔 이내</td></tr>
<tr><td>교재비</td><td colspan="2">정규 수업에서 사용되고,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전학생이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 (교과서, 부교재적 도서, 워크북, 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td><td>실비지급</td></tr>
<tr><td>수업료</td><td colspan="2">수업료</td><td>아래※1 、※2 참조</td></tr>
<tr><td>입학료</td><td colspan="2">입학료</td><td>공립고교입학료상당액</td></tr>
<tr><td>입학고사료</td><td colspan="2">입학고사료 (수험(검)료)</td><td>30,000 엔 이내</td></tr>
<tr><td>통학교통비</td><td colspan="2">통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td><td>실비지급</td></tr>
<tr><td>입학준비금</td><td colspan="2">교복,통학용가방,신발, 와이셔츠 등의 구입비</td><td>87,900 엔 이내</td></tr>
<tr><td>학습지원비</td><td colspan="2">과외클럽활동비 등</td><td>실비지급
(연간상한액 84,600 엔 이내)</td></tr>
</table>
※1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1~3 학년) 등 수업료는 공립고교취학지원금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에 의하여 급부대상외
※2 고등전문학교(4, 5 학년)등의 수업료는 수업료 감면조치등을 적용 한 후의 실제 지불액이 급부대상
※3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65 ~ 66)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구분에 의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 또는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준비금과 장학금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는 자로, 이하의 항복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사립고등학교(통신학교 제외) 또는 외국인학교 (※1) 에서 수학하고 있는 분 2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로, 국・공립・사립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전문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에서 수학하고, 다음①~⑥에 해당하는 분 ① 모자세대 ②부자세대 ③아동세대 ④장애인세대 ⑤장기요양세대 ⑥ 지사(知事)가 특별히 인정한①~⑤에 준하는 세대 주 : ①~③에 한해서는 세대원의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④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서 수학하는 분은 대상외** ・ **「동종의 자금」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의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

지급액

단위 : 엔

세대 구분	명 칭	종 별		지급액 연 액	지급액 월 액	비 고
생활보호 세대	입학 준비급	사립고교	전일제	110,000	-	1 학년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69,000	-	
	장학금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정시제・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228,000	19,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3
		외국인학교 ※1	전일제	228,000	19,000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입학 준비금	국공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63,000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를 제외
		사립고교	전일제	178,000	-	1 학년 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137,000	-	
		통 신 제		45,000	-	
	장학금	국공립 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공과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192,000	16,000	※4
		국공립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 제외)		168,000	14,000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정시제・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396,000	33,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3
			정시제	288,000	24,000	
		외국인학교 ※1	전일제	396,000	33,000	

	지원금 (학용품비 등)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1 학년 60,000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제외 ·장학을 위한 급부금과의 병급조정을 합니다. ※5

※1 학교법인이 설치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고등학교 상당과정

※2 교토부내 사립고교는 정부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과 교토부제도「교토부 사립고등학교 안심수학지원제도」에서 실질수업료가 무상화가 되어지므로 본 장학금은 지급하지 되지 않습니다.

※3 교토부외 사립고교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표의 금액과 정부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및「효고현 사립고교에 통학하고 있는 분의 학비경감」과의 차액금을 지급합니다.

※4 고등전문학교는 고등교육 무상화제도가 적용되면 실질수업료가 무상화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지원금에 대해서는 표의 금액과 「장학을 위한 급부금」(P.65)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시기

【생활보호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4 월말까지)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제 2 차 신청 : 6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6 월말까지)

지급 시기

입학준비금	【생활보호세대】 3・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3・4 월 (1 차)、7 월 (2 차)
장학금	

	생활보호세대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	4 월	4 월 (1 차)、7 월 (2 차)
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	8 월	8 월
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	12 월	12 월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학용품비 등)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

신청 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뒤,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이역의 부보건소(P.2) 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생활보호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생활보호세대를 증명하는 서류 (수급증명서 등)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장학금지급대상자 만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시정촌 민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서류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증명서)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장학금지급대상자 만 ④ 지원금이용예정서 ▸신체장애인 세대・・・신체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연금수첩 사본 ▸장기요양자 세대・・・의사 진단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비 고	동종의 자금은 다음의① ~ ⑦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 (P.57) ③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8)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9) ⑤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6) ⑥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학교에 지급** (P.69) ⑦ 효고현~~・나라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P.72) ※①～⑦이외에도 유사제도에 의한 급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 대출】

<table>
<tr><td>내 용
(자금의 종류)</td><td>1 교육지원비 : 저소득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 취학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공적 교육지원대출 제도※1」의 차입이 가능할 때까지 「츠나기자금※2」에서 빌려드립니다.
※1「공적 교육지원대출제도」는 다음①,②,③입니다.
① 고등학생등 취학지원사업 수학금 (P. 46 ~ 47、P.76 ~ 77)
② 모자 부자 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P.44 ~ 45、P.75)
③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금 (P.50 ~ 51、P.81~82)
※2「츠나기 자금」은
※1의①은 4 월이후 대출. ②,③또한 대출이 4 월이후 인 점에서 납입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교육지원비는 ① ~ ③ 중 어느 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까지 「츠나기 자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① ~ ③의 대출을 받은 경우】입학 후 12 월에 일괄상환(반제) 하셔야 합니다.
【① ~ ③의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츠나기자금」이 아닌, 계속 대출해드립니다.
2 취학준비비 : 고등학교등 입학 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드립니다.</td></tr>
<tr><td>대상자</td><td>저소득세대(생활보호기준의 1.8 배 이내 소득수준세대)의 자녀로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중고일관교의 고교) , 전수학교 (고등과정) ,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취학하는 분
※ 고교생 등 수학지원사업의 「수학준비금」을 신청 한 경우 (예약신청 포함) 는,「2 취학준비비」 대출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td></tr>
<tr><td>대출금액</td><td>1 교육지원비 : 6 개월 상한으로 월단위로 빌려드립니다. 단위 : 엔
<table>
<tr><td colspan="2" rowspan="2">학교종별등</td><td colspan="2">대출한도액 (월액)</td></tr>
<tr><td>자택통학</td><td>자택외통학</td></tr>
<tr><td rowspan="2">고등학교등</td><td>국공립</td><td>18,000</td><td>23,000</td></tr>
<tr><td>사 립</td><td>30,000</td><td>35,000</td></tr>
<tr><td rowspan="2">고등전문학교</td><td>국공립</td><td>21,000</td><td>22,500</td></tr>
<tr><td>사 립</td><td>32,000</td><td>35,000</td></tr>
</table>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대출 한도액×1.5 배를 상한으로, 특별분으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특별분 대출 대출금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P.5) 대출 상담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2 취학준비금 : 500,000 엔 이내</td></tr>
<tr><td>신청
(상담)
시기</td><td>※지망교를 결정하고, 입학 팜플렛등에서 입학에 필요한 경비가 확인되는 시점 (중학교 3 학년 가을쯤부터) 에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6) 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요.</td></tr>
<tr><td>상환기간</td><td>1 교육지원비 :「츠나기자금」은 입학후 12 월에 일괄상환(반제), 그외는 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3 배이내 (특별분은 4 배 이내(단, 최장 20 년))(P.73 과 같음)
2 취학준비비 : 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8 년 이내</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6) 로 문의 해 주십시요.</td></tr>
<tr><td>비 고</td><td></td></tr>
</table>

고등학교 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table>
<tr><td>내 용</td><td>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수학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입학금, 수업료, 서적대, 교통비 등) 을 빌려드립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또는 부자가정의 아버지로서, 다음년도 다음①또는②에 진학 할 예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분
①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전문학교,전수학교 (고교과정) 에 진학
②수업(修業)시설에 입소 (수업자금)
※ ①에 해당하는 분・・・수학자금,취학준비금 대출신청가능
②에 해당하는 분・・・취학준비금만 대출신청가능
・ 동종의 자금대출을 신청 한 경우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종의 자금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td></tr>
<tr><td>대출액</td><td>1 수학자금 월액한도액 (①에 해당되는 분)
단위 : 엔
<table>
<tr><td colspan="3">학교등종별 \ 학년별</td><td>1 학년</td><td>2 학년</td><td>3 학년</td><td>4 학년</td><td>5 학년</td></tr>
<tr><td rowspan="4">고등학교 전수학교</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27,000</td><td>27,000</td><td>27,000</td><td></td><td></td></tr>
<tr><td>자택외통학</td><td>34,500</td><td>34,500</td><td>34,500</td><td></td><td></td></tr>
<tr><td rowspan="2">사 립</td><td>자택통학</td><td>45,000</td><td>45,000</td><td>45,000</td><td></td><td></td></tr>
<tr><td>자택외통학</td><td>52,500</td><td>52,500</td><td>52,500</td><td></td><td></td></tr>
<tr><td rowspan="4">고등학교 전문</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31,500</td><td>31,500</td><td>31,500</td><td>67,500</td><td>67,5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33,750</td><td>33,750</td><td>33,750</td><td>76,500</td><td>76,500</td></tr>
<tr><td rowspan="2">사 립</td><td>자택통학</td><td>48,000</td><td>48,000</td><td>48,000</td><td>79,500</td><td>79,5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52,500</td><td>52,500</td><td>52,500</td><td>90,000</td><td>90,000</td></tr>
</table>
○수업자금 월액한도액 68,000 엔 (②에 해당되는 분)

○ 취학준비자금 한도액 단위 : 엔
<table>
<tr><td rowspan="4">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
에 입학</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150,0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160,000</td></tr>
<tr><td rowspan="2">사 립</td><td>자택통학</td><td>410,0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420,000</td></tr>
<tr><td colspan="2" rowspan="2">수산(修業)시설에 입소</td><td>자택통학</td><td>272,0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282,000</td></tr>
</table></td></tr>
</table>

신청 (상담) 시기	**대출 관련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접수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부(府)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 차용서 제출 확인 후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②세대전원의 주민표(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③인감등록증명서 ④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소득증빙서류 ⑥재학(적)증명서【수학자금, 수업자금의 경우】 합격통지서【취학준비자금】 ⑦학교안내 혹은 학비납입통지 등 필요 경비가 명확히 기재된 것 ⑧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 해 주십시요.
비 고	동종자금은, 다음① ~ ③과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생활복지자금대출금 (교육지원자금)**대출** (P.43、P.74)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출** (P.50 ~ 51、P.81~82)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등에 대하여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해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대출제도	2 수학지원특별융자이자보조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 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 수학금 대출제도」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의 융자를 이용했을 때에 지급되어진 이자의 전액을 교토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부(府)에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거주하고 세대전체의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④)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출제도」의 기준을 초과하고, 주 생계유지자의 년수입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 이하의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동종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의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	
대출 또는 융자액	국공립 월액 18,000 엔이내 (천엔단위) 사립 월액 30,000 엔이내 (천엔단위) ※자택외통학은 5,000 엔 가산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자는, 그 지급액에 따라 대출액의 감액 조정을 합니다.	국공립 일괄 (3 년분) 648,000 엔이내 분할 각년도 216,000 엔이내 사립 일괄 (3 년분) 1,080,000 엔이내 분할 각년도 360,000 엔이내
	※중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의 3 학년 전원에게 예약신청 안내 리플렛을 배부합니다. 예약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중학교에「안내서」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예약
신청
수속
및
대출
시기</td><td>・다음①～⑤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예약신청서— 소득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 （중학교 3 학년 10 월～12 월중순）
→중학교에
② 부(府)에서 예약결정통지서를 교부
③ 합격발표후,예약본신청서제출
(중학교 3 학년 2 월～ 3 월중순）
→중학교에
④ 진학후,부(府)에서 대출결정통지 교부
⑤ 대출（ 4 월말～ 6 월말）</td><td>・다음①～⑧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이용신청（중학교 3 학년 10 월～12 월중순）
→중학교에
②특별융자신청자격인정신청
（중학교 3 학년 2 월～ 3 월）
③부(府)에서인정증 교부(진학후 4 월하순～ ）
④금융기관에 신청(진학후 5 월～ 8 월말일）
⑤금융기관 심사후 융자결정
⑥융자（ 5 월상순～ 6 월중순）
⑦지급되어진 1 년분에 대한 이자보조를 부(府)에 신청（익년 6 월）
⑧부(府)에서 이자보조（익년 8 월）</td></tr>
<tr><td colspan="2">※입학후에도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5 월중순까지）→（P.79～80）</td></tr>
<tr><td>대출
또는
융자
시기</td><td>부(府)에서 년 2 회로 나누어 계좌이체
<table><tr><td>구분</td><td>이체시기</td></tr><tr><td>4 월분～9 월분</td><td>4 월말～ 6 월말</td></tr><tr><td>10 월분～ 3 월분</td><td>1 0 월말</td></tr></table></td><td><table><tr><td>융자방법</td><td>융자시기</td></tr><tr><td>일괄</td><td>입학년도의 5 월～ 8 월</td></tr><tr><td>분할</td><td>첫해 5 월～ 8 월
다음해이후 4 월～</td></tr></table></td></tr>
<tr><td>연대
보증인</td><td>1 명（친권자 가능）</td><td>불요하나 보증（수수）료 자기부담</td></tr>
<tr><td>상환
기간</td><td>대출종료후 20 년이내
(반환유예는 유예종료후 20 년이내)</td><td>최초 융자받은 달,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내</td></tr>
<tr><td>문의처</td><td colspan="2">자세한 사항은 재적 중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고</td><td colspan="2">동종의 자금은 다음①～⑩와 같습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 대출 （P.44～49、P.75）
②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 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6）
③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40～42、P.54～56）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P.59 ～ 60）
⑤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8）
⑥ 취학장려비（특별지원학교） 지급 （P.61～62）
⑦ 간호사등 수학자금 대출 （P.102）
⑧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출 （P.50～51、P.81~82）
⑨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혜택 （P.83）
⑩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중학교 3 학년의 대출이 아니므로, 입학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 복지 자금 대출금(P.43)에 대해,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생활 보호를 수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P.39)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지사무소(P.5)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td></tr>
</table>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고등학생등 수학 지원사업 (수학준비금)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 의욕이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에게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해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출제도	2 수학준비금 특별융자 이자보조 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 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출제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의 융자를 이용했을 때에 지급되어진 이자의 전액을 교토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부(府)에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거주하고, 세대전체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출제도」의 기준을 초과하고, 주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150 만엔 이상의 경우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주 1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P.46 ~ 47) 」의 대상자에 한해서, 이 제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수학준비금만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 2 :「동종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	
대출 또는 융자액	입학시 1 회 국공립 50,000 엔 정액 사립 250,000 엔 정액	
	※중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중학부 3 학년 전원에게 예약신청안내 리플렛을 배부합니다. **(모두 P.46 ~ 47 의 수학금과 함께 신청을 진행합니다.)**	

예약 신청 수속 및 대출 시기	・다음①~④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이용희망확인 (중학교 3 학년 10 월 ~ 12 월 중순) ② 대출신청(중학교 3 학년 2 월 ~ 3 월) ③ 진학후, 부(府)에서 대출결정통지서를 교부 ④ 대출 (4 월말 ~ 6 월말)	・다음①~⑧의 순서와 같습니다. ① 이용희망확인(중학교 3 학년 10 월 ~ 12 월 중순) ② 특별융자신청자인정신청 (중학교 3 학년 2 월 ~ 3 월) ③ 부(府)에서 인정증 교부(진학후 4 월하순 ~) ④ 금융기관에 신청(진학후 5 월 ~ 7 월말일) ⑤ 금융기관 심사후 융자결정 ⑥ 융자 (5 월상순 ~ 6 월중순) ⑦ 지급되어진 1 년분에 대한 이자보조를 부(府)에 신청 (익년 6 월) ⑧ 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
연대 보증인	1 명 (친권자 가능)	불요하나 보증 (수수) 료 자기부담
상환 기간	수학금 대출 종료 후, 7 년이내	최초 융자받은 달,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중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동종의 자금은 다음①~⑦과 같습니다. ① 모자 부자 복지자금대출금 (취학준비금) **대출** (P.44 ~ 45、P.75)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입학준비금) **지급** (P.40 ~ 42、P.54 ~ 56) ③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입학준비금) **지급** (P.59~60) ④ 모자가정장학금 등 (입학준비금) **지급** (P.58) ⑤ 생활복지자금대출금 (취학준비비) **대출** (P.43、P.74)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1 ~ 62) ⑦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중학교 3 학년의 대출이 아니므로, 입학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생활 복지 자금 대출금(P.43)에 대해,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생활 보호를 수급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업부조(고등학교 등 취학비)」(P.39)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지사무소(P.5)에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고등전문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출】

<table>
<tr><td>내 용</td><td>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취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출합니다.
▸학력・가계등의 기준이 있습니다.</td></tr>
<tr><td>대상자</td><td>고등전문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 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예약채용】</td></tr>
<tr><td>대출액</td><td>○제 1 종 장학금 (무이자) 대출월액 단위 : 엔
<table>
<tr><td>학교종별</td><td colspan="2">국・공립</td><td colspan="2">사 립</td><td rowspan="2">※학교종별・통학형태 관계없음</td></tr>
<tr><td>통학
연차</td><td>자택</td><td>자택외</td><td>자택</td><td>자택외</td></tr>
<tr><td>1 年 ~ 3 年</td><td>21,000</td><td>22,500</td><td>32,000</td><td>35,000</td><td>10,000</td></tr>
</table>
（4 年～5 年）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분(기준: 본인, 아버지, 어머니 및 중학생 4 인세대로 연수입 686 만엔을 넘는 경우)는 각 구분에서 가장 높은 대출 월액 이외의 금액에서 선택해야 합니다(색이 칠해진 부분).
<table>
<tr><td rowspan="2">진학처</td><td colspan="2">국・공립</td><td colspan="2">사 립</td></tr>
<tr><td>자택통학</td><td>자택 외 통학</td><td>자택통학</td><td>자택 외 통학</td></tr>
<tr><td rowspan="5">대학</td><td rowspan="3">45,000</td><td>51,000</td><td>54,000</td><td>64,000</td></tr>
<tr><td rowspan="2">40,000</td><td rowspan="2">40,000</td><td>50,000</td></tr>
<tr><td>40,000</td></tr>
<tr><td>30,000</td><td>30,000</td><td>30,000</td><td>30,000</td></tr>
<tr><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r>
<tr><td rowspan="5">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5 学年）
専修学校（専門課程）</td><td>45,000</td><td>51,000</td><td>53,000</td><td>60,000</td></tr>
<tr><td rowspan="2">30,000</td><td rowspan="2">40,000</td><td rowspan="2">40,000</td><td>50,000</td></tr>
<tr><td>40,000</td></tr>
<tr><td></td><td>30,000</td><td>30,000</td><td>30,000</td></tr>
<tr><td>2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r>
</table>
▶원칙 매월 계좌이체
○제 2 종 장학금（이자 포함）
<table>
<tr><td>진학처</td><td>대여 월액</td></tr>
<tr><td></td><td>국・공・사립／자택・자택 외 통학 공통</td></tr>
<tr><td>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4・5 学年）
専修学校（専門課程）</td><td>20,000 엔～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내에서 선택</td></tr>
</table>
▶원칙 매월 계좌이체</td></tr>
</table>

<table>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
<table>
<tr><th></th><th>구 분</th><th>신청시기</th><th>첫회 예좌이체일</th></tr>
<tr><td>1</td><td>예약채용
(입학전 신청)</td><td>중학교 3 학년 10 월 ~ 12 월중순
(재학교에 확인하여 주십시요)</td><td>5 월 또는 6 월</td></tr>
<tr><td>2</td><td>재학채용
(입학후 신청)</td><td>입학후 봄
(학교에 따라 상이함)</td><td>6 월 ~ 8 월 경</td></tr>
</table>
▶원칙 매월 계좌이체
</td></tr>
<tr><td>신청수속</td><td>【예약채용】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필요 서류(수입을 증명하는 것 등)를 첨부해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중학교를 통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청구해 주십시오.
【재학채용】
인터넷 신청 (스카라넷)
필요서류 (수입증명 등)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 발급 후 신청 입력을 하여 주십시요.</td></tr>
<tr><td>보증제도</td><td>「인적보증」또는 「기관보증」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인적보증 선택・・・연대보증인과 보증인 각 1 명 필요
② 기관보증 선택・・・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이 불필요
보증료는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에서 차감합니다.</td></tr>
<tr><td>반환
기간</td><td>대출종료 후 익월부터 7 개월째 되는 달부터 반환을 시작합니다.
제 1 종 장학금은 다음 ①、②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제 2 종 장학금은 ①의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① 정액반환방식 : 대출총액에 의해 반환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대 20 년)
②소득연동반환방식 : 전년도 소득과 연동해서 반환월액이 정해지고, 반환 기간은 반환 월액에 의해 정해집니다.</td></tr>
<tr><td>문의처</td><td>【예약채용】재학 중학교
【재학채용】재학 고등전문학교</td></tr>
<tr><td>비 고</td><td>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장학금 제도(대출형)>
https://www.jasso.go.jp/shogakukin/seido/index.html</td></tr>
</table>

제 7 편　고등학생 등을 위한 제도

고등학생등을위한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고등학교등 취학비)」【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취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학용품・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등에 취학하는 분
※고등학교 등
① 고등학교 (전일제・정시제・통신제)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고등전문학교
② 특별지원학교 고등부(별과 제외)
③ 고등학교 등에서의 취학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수업년한이 3 년 이상으로, 또한 보통교육과목을 포함하는 취업시간이 대략 800 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의 경우)</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생업부조」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h>기준액</th></tr>
<tr><td>기본액</td><td>【학용품비】연필,노트,지우개,정규,바느질 도구,체육용 신발 구입비</td><td>【그외】
교외활동비,통학용품 등 구입비</td><td>월액 5,300 엔</td></tr>
<tr><td>학급비</td><td colspan="2">학급비, 학생회비,PTA 회비 등</td><td>월액 1,780 엔이내</td></tr>
<tr><td>교재비</td><td colspan="2">정규 수업에서 사용되고, 해당 수업을 수강하는 전학생이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것 (교과서, 부교재적 도서, 워크북, 일영사전,악기) 의 구입비</td><td>실비지급</td></tr>
<tr><td>수업료</td><td colspan="2">수업료</td><td>아래※1 、※2 참조</td></tr>
<tr><td>통학교통비</td><td colspan="2">통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td><td>실비지급</td></tr>
<tr><td>학습지원비</td><td colspan="2">과외클럽활동비 등</td><td>실비지급
(연간 상한액
84,600 엔 이내)</td></tr>
</table>
※1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고등전문학교(1~3 년생) 등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립고교취학지원금 및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에 의하여 급부대상외
※2 고등전문학교(4 · 5) 등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업료감면조치등을 적용 한 후의 실제 지불액이 급부대상 (상한 있음)
※3 수학여행비, 수학여행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취학장려비 (P.61 ~ 62) 지급을 받고 있는 분은 구분에 의해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지급】

내 용	생활보호 수급세대 또는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가 고등학교등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준비금과 장학금 등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는 자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로서, 사립고등학교(통신학교 제외) 또는 외국인학교 (※1) 에서 수학하고 있는 분 2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의 자녀로, 국 · 공립 · 사립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 고등전문학교 또는 외국인학교에서 수학하고, 다음①~⑥에 해당하는 분 ① 모자세대 ②부자세대 ③아동세대 ④장애인세대 ⑤장기요양세대 ⑥ 지사(知事)가 특별히 인정한①~⑤에 준하는 세대 주 : ①~③에 한해서는 세대원의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④는 장애의 정도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서 수학하는 분은 대상외** ▶ **「동종의 자금」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의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

지급액

세대 구분	명 칭	종 별		지급액 연 액	지급액 월 액	비 고
생활보호 세대	입학 준비금	사립고교	전일제	110,000	-	1 학년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69,000	-	
	장학금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228,000	19,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3
		외국인학교 ※1	전일제	228,000	19,000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입학 준비금	국공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63,000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를 제외
		사립고교	전일제	178,000	-	1 학년 대상 (1 회만 지급)
			정시제	137,000	-	
		통 신 제		45,000	-	
	장학금	국공립 특별지원학교고등부전공과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192,000	16,000	※4
		국공립 특별지원학교고등부 (전공과 제외)		168,000	14,000	
		사립고교 (부내)	전일제 · 정시제 · 통신제 모두 지급대상외 ※2			
		사립고교 (부외)	전일제	396,000	33,000	정부지원금과 병합조정 ※3
			정시제	288,000	24,000	
		외국인학교 ※1	전일제	396,000	33,000	
	지원금 (학용품비 등)	국공립고등학교 사립고교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1 학년 60,000	-	·특별지원학교 고등부,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제외 ·장학을 위한 급부금과의 병급 조정을 합니다. ※5

<table>
<tr><td></td><td>※1　학교법인이 설치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고등학교 상당과정
※2　교토부내 사립고교는 정부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과 교토부제도「교토부 사립고등학교 안심수학지원제도」에서 실질수업료가 무상화가 되어지므로 본 장학금은 지급하지 되지 않습니다.
※3　교토부외 사립고교의 장학금에 관해서는, 표의 금액과 정부 제도「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및 효고현・나라현 사립고교에 통학하고 있는 분의 학비경감 (보조금) 과의 차액금을 지급합니다.
※4　고등전문학교는 고등교육 무상화제도가 적용되면 실질수업료가 무상화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지원금에 대해서는 표의 금액과「장학을 위한 급부금」과의 차액을 지급합니다.</td></tr>
<tr><td>신청
시기</td><td>【생활보호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4 월말까지)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세대】
제 1 차 신청 : 2 월
제 2 차 신청 : 6 월
이후는 수시 (입학준비금은 6 월말까지)</td></tr>
<tr><td>지급
시기</td><td>
<table>
<tr><td>입학준비금</td><td>【생활보호세대】 3 ・ 4 월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3 ・ 4 월 (1 차)、 7 월 (2 차)</td></tr>
<tr><td>장학금</td><td>
<table>
<tr><td></td><td>생활보호세대</td><td>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td></tr>
<tr><td>제 1 기분 (4 월 ~ 7 월까지)</td><td>4 월</td><td>4 월 (1 차)、 7 월 (2 차)</td></tr>
<tr><td>제 2 기분 (8 월 ~ 11 월까지)</td><td>8 월</td><td>8 월</td></tr>
<tr><td>제 3 기분 (12 월 ~ 3 월까지)</td><td>12 월</td><td>12 월</td></tr>
</table>
※ 국가제도「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등 다른 유사제도에 의해 급부 등을 받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지원금
(학용품비 등)</td><td>【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11 월하순(예정)</td></tr>
</table>
</td></tr>
<tr><td>신청
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뒤,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이역의 부보건소(P.2) 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생활보호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생활보호세대를 증명하는 서류 (수급증명서 등)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장학금지급대상자 만
【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① 재학증명서
② 시정촌 민세 비과세를 증명하는 서류 (시정촌(市町村)민세 비과세 증명서)
③ 정부「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결정통지서・・・장학금지급대상자 만
④ 지원금이용계획서
▸신체장애인 세대・・・신체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연금수첩 사본
▸장기요양자 세대・・・의사 진단서</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하여 주십시요.</td></tr>
</table>

비 고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종의 자금은 다음의① ~ ⑦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 (P.57) ③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8)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9~60) ⑤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6) ⑥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학교에 지급** (P.69) ⑦ 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P.72) ※①～⑦이외에도 유사제도에 의한 급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장학을 위한 급부금(고등학생 등 장학급부금)【지급】

내 용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세대의 학생에 대해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지급하고 지원합니다. <국공사립고등학교 등>
대상자	다음 ①~③모두 해당하는 학생의 보호자 ①생활보호수급세대(생업부조수급)의 학생또는 도부현(道府県)민세소득률액과 시정촌(市町村)민세 소득률액 비과세 세대의 학생 ②보호자(친권자 등)가 교토부내에 재주하고 있을 것 ③2018 년 4 월 1 일 이후에 입학하였고, 나라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또는 다시 배움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가진 자(특별지원학교의 고등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를 제외함)일 것 **※「동종의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동종의 자금 대출액이나 지급액을 경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의 자금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급액	①생활보호수급세대(생업부조수급) 국공립 년액 32,300 엔 사립 년액 52,600 엔 ②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률액 및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할액 비과세 세대(생활보호수급세대를 제외함)로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③의 경우를 제외함) 국공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84,000 엔, 통신제 : 년액 36,500 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03,500 엔, 통신제 : 년액 38,100 엔 ③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률액 및시정촌(市町村)민세소득할액 비과세 세대(생활보호수급세대를 제외함)로 부양받고 있는 둘째 이후의 고등학생이 있는 세대 또는 부양받고 있는 고등학생 이외에(중학생을 제외함) 15 세이상 23 세 미만의 부양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세대 국공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29,700 엔, 통신제 : 년액 36,500 엔 사 립 전일제, 정시제 : 년액 138,000 엔, 통신제 : 년액 38,100 엔
신청시기	7 월경 (7 월 1 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지급시기	10 월 하순이후
신청수속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에서 안내가 있으므로, 신청서류 생활보호수급세대(생업부조수급), 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할액 및 시정촌(市町村)민세 소득할액 비과세세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측에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현(県)의 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처	・국공립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TEL 075-574-7539) ・사 립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등 또는 교토부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 075-414-4516)
비 고	▶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종의 자금 중 대출액 또는 지급액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다음 ①~⑤입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 ~ 47)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40 ~ 42、P.54 ~ 56) ③ 모자가정장학금등 **지급** (P.58)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9 ~ 60) ⑤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6)

고등학생등을 위한

모자가정장학금등【지급】

<table>
<tr><td>내 용</td><td>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교육 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교토시 제외)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로서 고등학생(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 고등과정 포함)을 부양하고 있는 분
※「동종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자금은 비고란을 참고 해 주십시오.</td></tr>
<tr><td>지급액</td><td>1 장학금 학생 1 명당 년액 64,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학생 1 명당 35,000 엔 (고등학교 1 학년 대상)
(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로 5 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함)</td></tr>
<tr><td>신청시기</td><td>1 장학금 4 월 ~ 5 월말일
이후 수시 접수 (최종기한 : 2 월 말일)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5 월말일까지
※입학 전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2 월까지</td></tr>
<tr><td>지급시기</td><td>1 장학금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8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0 ~ 3 월</td></tr>
</table>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8 월말 (입학전 지급인 경우는 3 월)</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 ~ ②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거주지역의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에 제출해 주십시오.
① 편부모가정복지추진원 또는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
② 재학증명 (학교장 증명)

▸신청서는 보건소 또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시를 제외) 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市町村)(교토시를 제외함) 또는 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고등학교입학준비금은 입학시에 한합니다)
・ 동종 자금은 다음① ~ ④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수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 ~ 49、P.76 ~ 79)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40 ~ 42、P.54 ~ 56)
③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9~60)
④ 기능습득자금 **지급** (P.98)
동종 자금 중,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은 다음 ⑤입니다.
⑤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 (P.57)</td></tr>
</table>

고등학생등을 위한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지급】

<table>
<tr><td>내 용</td><td>교통사고에 의해 부모 등을 잃은 고등학생(특별지원학교 고등부 ・ 전수학교 고등과정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에 거주하는 교통사고에 의해 부모등을 잃은 고등학생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전수학교 고등과정 포함)
※「동종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자금은 아래의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td></tr>
<tr><td>지급액</td><td>1 장학금 학생 1 명당 년액 64,000 엔
(6 월 1 일 이후 신청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자가 된 경우, 월액 지급이 됩니다.)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학생 1 명당 35,000 엔・・・고등학교 1 학년 대상
(고등학교 입학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로 5 월말까지 신청자에 한함)</td></tr>
<tr><td>신청시기</td><td>1 장학금 4 월 ~ 5 월말일
이후 수시 접수 (최종기한 : 2 월 말일)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1 차 신청 : 입학전 2 월 말일
2 차 신청 : 4 월 ~ 5 월 말일</td></tr>
<tr><td>지급시기</td><td>1 장학금
<table>
<tr><th>대상자구분</th><th>신청월</th><th>지급대상기간
(신청년도)</th><th>지급월</th></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1 일 현재,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4 ~ 3 월</td><td>11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r><td rowspan="2">신청년도 4 월 2 일 이후, 지급대상자이신 분</td><td>4 ~ 5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1 월말</td></tr>
<tr><td>6 ~ 2 월</td><td>신청월의 익월 ~ 3 월</td><td>11 월 이후는 신청월의 익월말</td></tr>
</table>
2 고등학교입학준비금 1 차신청 : 3 월 말일, 2 차신청 : 8 월 말일</td></tr>
</table>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③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부(府)광역진흥국 또는,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 · 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에 제출 해 주십시오. ① 민생위원・아동위원의 증명 (사망신고서 (사본) 및 교통사고 증명서(사본)의 첨부가있는 경우는 불요) ② 학교장의 증명(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음) ③ 시정촌(市町村)장의 증명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 ②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합격통지서(사본) 또는 입학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입학 후 5 월 말일까지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신청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토부청 부민(府民)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부(府)광역진흥국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사항은교토부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 추진과 (TEL075-414-5076) 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 매년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종 자금 중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다음①~③입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장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49、P.76~79)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40~42、P.54~56) ③ 모자가정장학금 등 **지급** (P.58) 동종 자금 중,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은 다음 ④입니다. ④ 장학을 위한 급부금 **지급**(P.57)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학생을 위한 제도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지급】

내 용	특별지원학교에 취학하기 위한 경비에 대하여, 가정의 경제상황(소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특별지원학교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지급액	○대상 경비 및 보조한도액

구 분 ※1			Ⅰ	Ⅱ	Ⅲ
교과서 구입비			실비	실비	실비
학교급식비			실비	실비의 1/2	-
교통비	통학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2	실비※2	실비 ※2
	귀성비 39 왕복분	본인 경비	실비	실비	실비
		보조인 경비	실비 ※2	실비※2	실비 ※2
	직장실습비		실비	실비	실비의 1/2
	교류 및 공동학습비 (전공과 제외)		실비	실비	실비의 1/2
기숙사 거주에 의한 경비		침구구입비 (전공과 제외)	5,510 엔	2,755 엔	-
		일용품등 구입비	141,560 엔	70,780 엔	-
		식비	139,750 엔	69,875 엔	-
수학여행비	수학여행비 (전공과제외)	본인 경비	107,810 엔	53,905 엔	-
		보조인 경비	155,760 엔※2	77,880 엔※2	-
	교외활동비 (전공과제외)	본인 경비	24,820 엔	12,410 엔	-
		보조인 경비	37,220 엔※2	18,610 엔※2	-
	직장실습숙박비		7,520 엔	3,760 엔	-
학용품구입비 (전공과 제외)			32,270 엔 ICT 기기 등 구입한 경우 50,930 엔 가산	16,135 엔 ICT 기기 등 구입한 경우 50,930 엔 가산	ICT 기기 등 구입한 경우 50,930 엔 가산
음성교재비 1 교과 단가로 산정한 금액 (전공과 제외)			1 교과 한도 19,170 엔	Ⅰ의 1 / 2	-
신입학 아동・학생 학용품비 등 (전공과 제외)			57,980 엔	28,990 엔	-

※1 표 구분Ⅰ,Ⅱ,Ⅲ은 보호자분의 경제상황(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통학비 보조인 경비, 귀성비 보조인 경비, 수학여행비 보조인 경비, 교외활동등 참가비 보조인 경비는 지체부자유 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보조인입니다.

신청시기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하고 있는 특별지원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TEL075-414-5835)에 문의 바랍니다.
비 고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금액은 2020 년기준입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고등학교 학생 통학비 보조금【지급】

내 용	고액의 통학비를 부담하고 있는 고등학생 보호자분께 통학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자	부내 공립 또는 사립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다음①~③의 모두 해당하는 분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통학을 위한 교통비)를 수급받고 있지 않은 분 ② 다음의 2-1 또는 2-2 에 해당되는 분 2-1 학생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전체의 전년도 소득이 다음 별표 1 또는 별표 2(공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는【공립고교】, 사립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는【사립고교】)의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 2-2 학생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체의 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할액과 시정촌(市町村)민 소득할액 (이하「세대 전체의 주민세」라고 표기합니다.) 가 비과세인 분

별표 1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3 인 이하	6,749,000 엔
4 인	6,962,000 엔
5 인	7,175,000 엔
6 인	7,388,000 엔
7 인 이상	7,388,000 엔 + 213,000 円 / 1 인 증가 당

별표 2【공립고교】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1 인	1,460,000 엔
2 인	2,060,000 엔
3 인	2,760,000 엔
4 인	3,230,000 엔
5 인	3,590,000 엔
6 인	4,060,000 엔
7 인 이상	4,060,000 엔 + 470,000 엔 / 1 인 증가 당
・ 상기 소득금액에 다음 각각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 됩니다 1 모자・부자세대 280,000 엔 2 장애인 1 인당 320,000 엔 3 장기요양자로 요양을 위해 경제적으로 특별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사립고교】

세대인원	소득기준액
2 인 이하	3,001,000 엔
3 인	3,347,000 엔
4 인	3,571,000 엔
5 인	3,785,000 엔
6 인	3,969,000 엔
7 인 이상	3,969,000 엔에, 세대인수가 6 인을 넘으면 1 인 증가에 대해 162,000 엔을 더한 금액

	③ 1 개월 통학비부담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상기「별표 1 」에 해당・・・22,100 엔 ▸ 상기「별표 2」에 해당・・・17,000 엔 ▸ 세대 전체의 주민세가 비과세・・・10,000 엔 **전수학교 고등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분은 지급 대상 외**
지급액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 (22,100 엔 또는 17,000 엔 또는 10,000 엔) × 정기권 등 구입 월수) × 1 / 2** 예 1)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275,000 円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275,000 엔 - (22,100 엔×11 개월)) ×1/2 = 15,950 엔 1 년간 15,000 엔의 보조금 지급.(1,000 엔 미만 절사) 예 2)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220,000 円 「별표 2 」에 해당하는 경우 (220,000 엔 - (17,000 엔×11 개월)) ×1/2 = 16,500 엔 1 년간 16,500 엔의 보조금 지급. (1,000 엔 미만 절사) 예 3) 1 년간의 정기권 등 구입액 165,000 円 세대전체의 전년도 주민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165,000 엔 - (10,000 엔×11 개월)) ×1/2 = 27,500 엔 1 년간 27,000 엔의 보조금 지급. (1,000 엔 미만 절사)
신청시기	원칙 6 ~ 7 월 (8 월 이후에 이사 등으로 지급대상이 된 경우는 수시접수)
지급 시기	4 월~9 월분, 10 월~ 3 월분, 년 2 회 지급 지급시기는 사무 수속의 시기에 따라 상이함
신청 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 후, 다음의 ①, ②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① 소득에 관한 증명서 ② 권면액 (금액이 표시되어진 면) 의 복사 정기권의 구입에 의한 신청・・・정기권의 권면 복사 회수권의 구입에 의한 신청・・・회수권의 영수증 ※ 모두 2020 년 4 월 1 일 이후 구입한 것이 대상입니다.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비 고	<부청담당과> 공립고교 :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075-574-7516)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TEL075-414-4517)

정시제・통신제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정시제 과정 교과서 및 통신제 과정 교과서・학습서 보조금

내 용	교토부립고등학교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구입하는 교과서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합니다.
대상자	교토부립 고등학교의 정시제과정 또는 통신제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 (「장학을 위한 급부금」수급자는 제외) ① 직업학생으로 보조를 희망하는 분 ② 직업학생 이외의 학생 중, 구직중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취업이 곤란한 자 중 보조를 희망하는 분 **※ 직업학생은 정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분 (자영업 종사자 포함) 또는 1 년간 90 일 이상 파트와 아르바이트로 취업하고 있는 분**
신청시기	9 월
지급시기	12 월
신청수속	교과서등 취급서점에서 현금구입 후, 보조금교부신청서류 등을 학교에 제출 ※ 1 , 2 모두 인정요건에 따라 아래의 증명서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직업학생・・・・재직증명 등 ・직업학생이외의 분・・진단서, 헬로워크카드 (사본) 등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 부청담당과 >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 : 075-574-7516)

정시제・통신제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정시제 과정 및 통신제 과정 수학장려금【무이자대출】

<table>
<tr><td>내 용</td><td>정시제과정 ・ 통신제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학장려금을 대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경우, 대출금 반환면제가 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공립・사립고등학교 정시제과정・통신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교토부내에 거주하고, 타 부현(府県)의 광역통신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다음 ①~③ 모든조건에 해당하는 분
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현저히 취학이 곤란한 분
② 경제적 수입 (생활을 위한 수입) 을 얻는 직업에 취업하고 있는 분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 대출을 받고 있지 않는 분</td></tr>
<tr><td>대출액</td><td><table>
<tr><td colspan="2">과정
학년 (차)</td><td>정시제</td><td>통신제</td></tr>
<tr><td rowspan="2">1 ~ 4 년 (차)</td><td>공립</td><td>월액 14,000 엔</td><td>월액 14,000 엔</td></tr>
<tr><td>사립</td><td>월액 29,000 엔</td><td>월액 14,000 엔</td></tr>
</table></td></tr>
<tr><td>신청시기</td><td>원칙 4 월 ~ 6 월</td></tr>
<tr><td>대출시기</td><td>년 3 회 (원칙 7 월,11 월, 3 월)</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②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요.
① 소득에 관한 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등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td></tr>
<tr><td>연대
보증인</td><td>2 명</td></tr>
<tr><td>상환시기</td><td>대출 종료월의 익월부터 6 개월 경과후, 일괄상환 또는, 대출시기에 상당하는 기간내 (단, 재학중에는 상환이 유예됩니다)
※ 졸업 한 경우 상환이 면제됩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재학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장학을 위한 급부금(P.57)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는 대출액을 조정합니다.
공립고등학교 :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075-574-7516)
사립고등학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TEL075-414-4517)</td></tr>
</table>

공립 고교생을 위한 제도

공립 고교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부내의 공립고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 지원으로써, 소득제한의 기준액 미만의 세대의 학생에 대해,「취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학교설치자・학교에 수업료로 할당하기 때문에, **학생・보호자에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	2014 년 4 월 이후의 입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2020 년 4 월 ~ 6 월에 수속하는 경우＞ 보호자의 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할액과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소득할액의 합계액이 소득기준액(50 만 7,000 엔)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 확정 신청을 행하고, 확정된 경우, 취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로 충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상화 교육 입니다.) ＜2020 년 7 월 이후에 수속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보호자의「지방세의 과세소득× 6 %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정령지정도시인 경우는、조정공제에 3 / 4 를 곱한다) 」이 되며, 소득기준액이 30 만 4,200 엔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는 세대는, 수업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지급액	취학지원금・・・수업료와 동일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부립고교 전일제 월액 9,900 엔 (전일제는 36 개월) 정시제 월액 1,250 엔 (16 단위 이상의 경우) (정시제는 48 개월) 통신제 월액 175 엔 (1 단위 당) (통신제는 48 개월)
신청시기	수급자격 확정 신청 ・・・입학시인 4 월 경 (입학한 고교에 제출) 수입상황서 ・・・매년 7 월 경 (시정촌민세소득할액의 과세표준액 등의 확인이 필요)
지급 시기	정부의 교부에 따라, 수업료에 충당합니다. (**학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수속	학교로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급자격 확정 신청(4 월)・・・입학한 학교에,「수급자격 확정 신청서」「도부현(道府県)민세 소득할액과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소득할액을 알 수 있는 서류(친권자 합산, 전전년도의 소득에 준하는 것) 」을 제출 수입 상황서 제출 (7 월) ・・・「수입 상황서」「 마이넘버 관계 서류 또는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소득할액의 과세표준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친권자 합산, 전년도 소득에 준하는 것) 」을 제출 ※이미 마이넘버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 "마이넘버 관계 서류 또는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税)소득할액의 과세표준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 및 교토부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TEL 075-574-751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교토시림 고등학교등는 교토시교육위원회 조사과 (TEL075-222-3817)).
비고	▸ 매년, 신청 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제한의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학지원금의 대상이 아니지만, 보호자의 실직, 도산 등에 의해 가계가 급변하여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수업료의 감면조치 신청제도가 있으니,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중도퇴학을 당한 분이 취학지원금의 지급기간 전일제 36 개월(정시제・통신제 48 개월)을 넘어 재학하는 경우에, 소득기준액 미만이 인정되는 경우, 전일제 최대 12 개월(정시제・통신제 최대 24 개월)까지 취학지원금 상당액의 지원(다시배우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평성 25 년도말 미공립고교 등재 학생은, 계속해서 수업료 불징수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사립고교생・고등전문학교생을 위한 제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고등학교등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사립고등학교 등에(교토부외도 포함) 재학하고 있는 학생 ※사립고등학교 ① 사립고등학교 (전일제・정시제・통신제) ② 사립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중고일관교 고등학교) ③ 사립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고등전문학교 (1 학년 ~ 3 학년) ⑤ 전수학교 고등과정 **※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자, 전공과・별과 학생 및 과목 이수생, 청강생은 지급대상 외**
지급액	【2020 년 4 월 ~ 6 월】 ▸ 친권자의 시정촌민세소득할액과 도부현민세소득할액 총합이 507,000 엔 미만 → 월액 9,900 엔 (년액 118,800 엔) ▸ 친권자의 시정촌민세소득할액과 도부현민세소득할액 총합이 257,500 엔 미만 → 가산지급 월액 33,000 엔 (년액 396,000 엔) ※통신제 : 월액 24,750 엔 (년액 297,000 엔) 【2020 년 7 월 ~】 ▸친권자의「지방세의 과세소득× 6 %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정령지정도시인경우에는 조정공제에 3 / 4 를 곱한다)」 총합이 304,200 엔 미만 → 월액 9,900 엔 (년액 118,800 엔) ▸친권자의「지방세의 과세소득× 6 % - 시정촌민세의 조정공제액 (정령지정도시인 경우에는 조정공제에 3 / 4 을 곱한다)」 총합이 154,500 엔 미만 → 가산지급 월액 33,000 엔 (년액 396,000 엔) ※통신제 : 월액 24,750 엔 (년액 297,0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상이함 신청 수속에 관해서는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등으로 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신청수속	학교로부터 안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부하는 서류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학교가 지정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이넘버 카드 사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TEL075-414-4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 수속이 필요합니다

사립고교생을 위한 제도

사립 고등학교 안심 수학 지원 사업【수업료 감면・학비 경감】

내 용	부내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 감면 또는 학비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부(府)가 대상 학생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학교 수업료 등의 학비에 대하여 감면(감액,면제)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학생의 보호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주소가 있고, 교토부내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고있는 학생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타 부현(府県)에 있는 통신제 고등학교는 대상 외**
지급액	▸ 생활보호세대 →고등학교등 취학 지원금 (정부제도) (P.69~70) 과부(府)보조제도를 활용한 각 학교의 수업료 감면으로, 929,000 엔을 상한으로 조성 ※1 ▸ 년수입 590 만엔 미만인 세대 ※2 → 고등학교등 취학 지원금 (정부제도) (P. 69~70) 과 부(府)보조제도를 활용한 각 학교의 수업료 감면으로 650,000 엔을 상한으로 조성 ▸ 년수입 590 만엔~년수입 910 만엔 미만인 세대 ※2 →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정부제도) (P. 69~70) 과 부(府) 학비 경감제도(년 80,000 엔(통신제 17,000 엔))에 의해, 최대 198,800 엔을 조성 ※1 2020 년 3 월 시점의 금액입니다. ※2 연수입은 모델 세대 (양친・고등학생・중학생 4 인 가족이며, 양친 한 쪽이 일하고 있는 경우) 기준입니다.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수업료면제는 6 월경, 학비경감은 7~9 월경 구체적 시기는 학교에 따라 상이합니다. 학교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요. ※매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증명서 등 고등학교가 지정한 첨부서류와 함께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고등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075-414-4516・451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실업・도산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일정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각 사립고등학교에서 수업료 감면 등이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립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고교생을 위한 제도

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table>
<tr><td>내 용</td><td>효고현 사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에 대한 학비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부(府)가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수업료 등의 학비에 대하여 감면조치를 해주는 제도입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당해년 10 월 1 일 현재, 효고현 의 사립 고등학교 (통신제 제외)에 재적하고 있는 분으로, 정부 취학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분
※ 전수학교 고등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대상 외</td></tr>
<tr><td>보조액</td><td>
<table>
<tr><th>학교소재지</th><th>보호자 소득기준 ※1</th><th>보조금액(학생 1 인당 년액)※2</th></tr>
<tr><td rowspan="4">효고현</td><td>생활보호세대</td><td>6,000 엔</td></tr>
<tr><td>연수 590 만엔미만정도</td><td>6,000 엔</td></tr>
<tr><td>연수 730 만엔미만정도</td><td>50,000 엔</td></tr>
<tr><td>연수 910 만엔미만정도</td><td>25,000 엔</td></tr>
</table>
※1 상기 연수입은 모델세대 기준입니다.
기준액은 재적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학지원금 (정부제도) 공제 후, 납부해야 할 수업료의 년액이 상기보조금을 하회하는 경우, 납부 수업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td></tr>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구체적인 시기는 학교에 따라 상이합니다. 학교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증명서 등 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재적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재적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075-414-451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P.40~42, P.54~56) 을 이용하고 있는 분은 본 제도 이용에 의해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이 병합조정 (감액)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사립고등학교 전공과에 재적하는 학생을 위해

사립고등학교 전공과 수학지원금【학교에 지급】

내 용	사립고등학교 전공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수업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사립고등학교 등의 전공과에 재적하고 있는 분.
보조액	▸ 친권자의 시정촌민세소득할액과 도부현민세소득할액 총합이 0 엔(비과세) → 월액 35,600 엔 (년액 427,200 엔) ▸ 친권자의 시정촌민세소득할액과 도부현민세소득할액 총합이 85,500 엔 미만 → 월액 17,800 엔 (년액 213,600 엔)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학교에 따라 상이함.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과세증명서 등 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첨부서류와 함께 재적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정촌민세 소득할액과 도부현민세 소득할액(보호자 합산)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학교 또는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TEL075-414-4516)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매년 수속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생활복지자금 대출금「교육지원자금(교육지원비)」【무이자대출】

<table>
<tr><td>내 용
(자금
종류)</td><td>교육지원비 : 저소득세대의 자녀가 다른「공적인 교육지원대여 (대부) 제도※」의
대출을 어떠한 이유에서 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 「공적인 교육지원대여제도」는 다음①,②,③ 제도와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P.46~47, P.76~77)
②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P.44~45, P.75)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P.50~51, P.81~82)</td></tr>
<tr><td>대상자</td><td>저소득세대(생활보호기준 1.8 배 이내의 소득수준 세대)의 자녀로서,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중고일관교의 고교),
전수학교(고등과정)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분</td></tr>
<tr><td>대출금액</td><td>6 개월을 상한으로 하여, 월단위로 갚습니다. 단위 : 엔
<table>
<tr><td colspan="3">학교종별등</td><td colspan="2">대출한도액 (월액)</td></tr>
<tr><td colspan="3"></td><td>자택통학</td><td>자택외통학</td></tr>
<tr><td rowspan="2">고등학교등</td><td>국공립</td><td>1 년 ~ 3 년</td><td>18,000</td><td>23,000</td></tr>
<tr><td>사 립</td><td>1 년 ~ 3 년</td><td>30,000</td><td>35,000</td></tr>
<tr><td rowspan="4">고등전문학교</td><td rowspan="2">국공립</td><td>1 년 ~ 3 년</td><td>21,000</td><td>22,500</td></tr>
<tr><td>4 년 ~ 5 년</td><td>44,000</td><td>50,000</td></tr>
<tr><td rowspan="2">사 립</td><td>1 년 ~ 3 년</td><td>32,000</td><td>35,000</td></tr>
<tr><td>4 년 ~ 5 년</td><td>52,000</td><td>59,000</td></tr>
</table>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대출한도액×1.5 배를 상한으로 특별분으로써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분대출의 대출금액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P.6) 의 대출상담창구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td></tr>
<tr><td>신청
(상담)
시기</td><td>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6) 에 상담하여 주십시요.</td></tr>
<tr><td>상환시기</td><td>졸업후 3 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3 배 이내
특별분의 대출을 받은 경우는, 졸업 후 3 개월 이내의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4 배 이내 (단 최장은 20 년으로 함)</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6)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td></tr>
</table>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 등에 수학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수업료, 서적대, 교통비 등) 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교토시를 제외함)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고등부 포함),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고등과정)에 수학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동종 자금」의 대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자금은 아래의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
대출액	○수학자금 월액한도액 단위 : 엔

학교등종별 \ 학년별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5 학년
고등학교 전수학교	국공립	자택통학	27,000	27,000	27,000		
		자택외통학	34,500	34,500	34,500		
	사 립	자택통학	45,000	45,000	45,0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고등학교 전문	국공립	자택통학	31,500	31,500	31,500	67,500	67,500
		자택외통학	33,750	33,750	33,750	76,500	76,500
	사 립	자택통학	48,000	48,000	48,000	79,500	79,500
		자택외통학	52,500	52,500	52,500	90,000	90,000

신청 (상담) 시기 대출시기	**대출 관련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접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역 부(府)보건소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결정 후, 차용서 제출이 확인되면 계좌이체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⑧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①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② 세대전원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③ 인감등록증명서 ④ 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재학(적) 증명서 ⑦ 학교안내서 혹은 학비납입 통지서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동종자금은 다음① ~ ③과 같습니다. ①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수학준비금) **대출** (P.46~49, P.76~79) ②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 **대출** (P.43, P.74) ③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출** (P.50~51, P.81~82)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 (수학금) 【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등에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한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출제도	2 수학지원 특별융자이자 보조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출제도」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분이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급되어진 이자 금액을 교토부가 보급(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일괄 교토부에서 보급합니다.
대상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재학하고있는 학생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세대전체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④)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1 고등학교등 수학금 대출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수가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 이하의 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동종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	
대출 또는 융자액	국공립 월액 18,000 엔 이내 사립 월액 30,000 엔 이내 ※자택외 통학은 5,000 엔 가산 ※「장학을 위한 급부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그 지급액에 따라 대출액의 감액조정을 행합니다.	국공립 일괄 (3 년분) 648,000 엔 이내 분할 각년도 216,000 엔 이내 사립 일괄 (3 년분) 1,080,000 엔 이내 분할 각년도 360,000 엔 이내
신청 시기	【신입생】입학후 5 월중순까지 이후, 수시 【재학생】수시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대상)	【신입생】입학후 5 월 중순까지 【재학생】5 월 중순까지

<table>
<tr><td rowspan="2">신청
수속
및
급부
시기</td><td colspan="2">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소득에 관한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요.「안내서」는 학교에 요청해 주십시요.</td></tr>
<tr><td>▶다음① ~ ③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대출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대출결정통지를 교부
③ 대출 (송금)</td><td>▶다음① ~ ⑦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신청자격인정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인정증 교부
③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8 월말)
④ 금융기관이 심사후 융자결정
⑤ 융자
⑥ 지급되어진 1 년분의 이자보조를 부(府)에 신청 (익년 6 월)
⑦ 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td></tr>
<tr><td>대출
또는
융자액</td><td>부(府)에서 년 2 회에 나누어 계좌이체
<table><tr><th>구분</th><th>납입기간</th></tr><tr><td>4 월분~9 월분</td><td>6 월말~7 월말
2 년째 이후는 4 월</td></tr><tr><td>10 월분~3 월분</td><td>10 월말</td></tr></table></td><td>【신입생】일괄융자 (첫해에 일괄) 또는 분할융자 (해마다),한가지 선택
【재학생】분할융자만
※ 융자시기는 신청시기 각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함</td></tr>
<tr><td>연대
보증인</td><td>1 명 (친권자 가능)</td><td>불필요. 보증 (수수) 료는 자기부담</td></tr>
<tr><td>상환
시기</td><td>대출종료후 20 년이내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종료 후 20 년이내)</td><td>최초 융자월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내</td></tr>
<tr><td>문의처</td><td colspan="2">자세한 사항은 재적 고등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 colspan="2">※진급시에는 계속 신청이 필요합니다.
동종 자금은 다음①~⑩와 같습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대출 (P.44 ~ 45, P.75)
②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대출 (P.66)
③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지급 (P.40~42, P.54~56)
④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지급 (P.59~60)
⑤ 모자 가정장학금 등 지급 (P.58)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1~6)
⑦ 간호사등 취학자급 대출 (P.102)
⑧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출 (P.50~51, P.81~82)
⑨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급부 (P.83)
⑩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 생활보호를 수급받고 있는 세대는「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P.53)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무소(P.5)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고등학생을 위한 제도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 (수학준비금) 【무이자대출 또는 이자보조】

면학의욕이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학이 곤란한 고등학생등에 수학금의 대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차입)에 대한 이자 보조를 합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출제도	2 수학준비금 특별융자이자 보조제도
내 용	교토부가 직접학생에게 대출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1 고등학교등 수학준비금 대출제도」의 소득기준액을 초과한 분이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교육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급되어진 이자 금액을 교토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익년도에 1 년분을 교토부에서 보조합니다.
대상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재학하고있는 학생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 세대전체 소득이 별도 정하는 소득기준액에 해당하는분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등 (아래① ~ ⑤)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 ・친권자가 교토부내 (교토시 포함) 에 거주하고「1 고등학교 등 수학금 대출제도」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요 생계유지자의 연수가 150 만엔 이상의 경우 ① 고등학교 ②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③ 특별지원학교(고등부) ④ 전수학교 (고등과정) ⑤ 고등전문학교
	주 1 :「고등학생 등 수학 지원 사업 (수학금) (P.76~77) 」대상자에 한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학 지도금만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 2 :「동종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종자금은 다음 페이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대출 또는 융자액	입학 시 1 회 국공립 50,000 엔 정액 사립 250,000 엔 정액	
신청 시기	입학 후 5 월 중순까지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소득에 관한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요. 신청서는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신청 수속 및 급부 시기	▶다음①~③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대출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대출결정통지를 교부 ③ 대출 (송금)	▶다음①~⑦의 절차와 같습니다. ① 신청자격인정신청 (5 월중순까지) ② 부(府)에서 인정증 교부(학교를 통해서) ③ 금융기관에 계좌이체 (~7 월말) ④ 금융기관이 심사후 융자결정 ⑤ 융자 ⑥ 지급되어진 1 년분의 이자보조를 부(府)에 신청 (익년 6 월) ⑦ 부(府)에서 이자보조 (익년 8 월)
대출・융자시기	6 월말~ 7 월말	신청시기, 각금융기관에 따라 상이함
연대 보증인	1 명 (친권자 가능)	불필요. 보증 (수수) 료는 자기부담
상환 시기	수학금 대출 종료 후, 7 년이내 (상환 유예의 경우, 유예 종료 후 7 년 이내)	융자월 또는 익월부터 최장 7 년이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재적 고등학교 또는 교토부 교육청지도부 고교교육과(075-574-75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동종 자금은 다음① ~ ⑦와 같습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 **대출** (P.44~45、P.75) ②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입학준비금) **지급** (P.40~42、P.54~56) ③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입학준비금) **지급** (P.59~60) ④ 모자가정 장학금 등 (입학준비금) **지급** (P.58) ⑤ 생활 복지자금 대출금 (취학준비비) **급부** (P.43、P.74) ⑥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지급** (P.61~62) ⑦ 도도부현(都道府県)・공공단체가 대여 또는 급부하는 장학금 ▸ 생활보호를 수급받고 있는 세대는「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P.53)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살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무소(P.5)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제도

고등교육의 수업료 등 감면

<table>
<tr><td>내 용</td><td>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주민세비과세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2020 년도 재학생(이미 입학한 학생을 포함)이 대상)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급부장학금 대상이 된 분은 본 제도의 대상도 됩니다.</td></tr>
<tr><td>감면액</td><td>수업료 등 감면 상한액(년액)(주민세비과세 세대 학생)
<table>
<tr><td></td><td colspan="2">국공립</td><td colspan="2">사립</td></tr>
<tr><td></td><td>입학금</td><td>수업료</td><td>입학금</td><td>수업료</td></tr>
<tr><td>대학</td><td>약 280,000 엔</td><td>약 540,000 엔</td><td>약 260,000 엔</td><td>약 700,000 엔</td></tr>
<tr><td>단기대학</td><td>약 170,000 엔</td><td>약 390,000 엔</td><td>약 250,000 엔</td><td>약 620,000 엔</td></tr>
<tr><td>고등전문학교</td><td>약 80,000 엔</td><td>약 230,000 엔</td><td>약 130,000 엔</td><td>약 700,000 엔</td></tr>
<tr><td>전문학교</td><td>약 70,000 엔</td><td>약 170,000 엔</td><td>약 160,000 엔</td><td>약 590,000 엔</td></tr>
</table>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학생은, 상기 감면액의 2 / 3 또는 1 / 3 의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대학 등에 진학 후 4 월경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감면기간</td><td>학교에 감면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감면인정결과 통지가 있은 후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통학예정인(재학중인) 대학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문부과학성 홈페이지〈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
URL:https://www.mext.go.jp/kyufu/</td></tr>
</table>

고등전문학교 학생을 위한 제도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대출】

내용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취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출합니다. **▶학력・가계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	중학교 등의 3 학년에 재적하고, 고등전문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며, 교장의 추천을 받은 분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예약채용】 고등전문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 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예약채용】
대출액	○제 1 종 장학금 (무이자)　대출월액

학교종별	국・공립		사　립		※학교종별・통학형태 관계없음
통학 / 연차	자택	자택외	자택	자택외	
1 年 ~ 3 年	21,000 엔	22,500 엔	32,000 엔	35,000 엔	10,000 엔

(4 년 ~ 5 년)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분(기준: 본인, 아버지, 어머니 및 고등학생(공립자택통학) 4 인세대로 연수입 626 만엔을 넘는 경우)는 각 구분에서 가장 높은 대출월액 이외의 금액에서 선택해야 합니다(색이 칠해진 부분).

진학처	국・공립		사　립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자택통학	자택 외 통학
대학	45,000	51,000	54,000	64,000
		40,000	40,000	50,000
				4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45,000	51,000	53,000	60,000
	30,000	40,000	40,000	50,000
				4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원칙 매월 계좌이체

○제 2 종 장학금(이자 포함)

진학처	대여 월액
	국・공・사립 / 자택・자택외통학　공통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20,000 엔 ~ 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중에서 선택

▶원칙 매월 계좌이체

<table>
<tr><td>신청시기
및
지급시기</td><td>
<table>
<tr><td></td><td>구 분</td><td>신청시기</td><td>첫회 예좌이체일</td></tr>
<tr><td></td><td>재학채용
(입학후 신청)</td><td>입학후 봄
(상세 시기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확인 해 주세요.)</td><td>6 월 ~ 8 월 경</td></tr>
</table>
▶원칙 매월 계좌이체
</td></tr>
<tr><td>신청수속</td><td>인터넷 신청 (스카라넷)
필요서류 (수입증명 등)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 발급 후 신청 입력을 하여 주십시요.</td></tr>
<tr><td>보증
제도</td><td>「인적보증」또는 「기관보증」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인적보증 선택・・・연대보증인과 보증인 각 1 명 필요
②기관보증 선택・・・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이 불필요
보증료는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에서 차감합니다.</td></tr>
<tr><td>반환
기간</td><td>대출종료 후 익월부터 7 개월째 되는 달부터 반환을 시작합니다.
제 1 종 장학금은 다음 ①、②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제 2 종 장학금은 ①의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①정액반환방식 : 대출총액에 의해 반환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대 20 년)
②소득연동반환방식 : 전년도 소득과 연동해서 반환월액이 정해지고, 반환 기간은 반환 월액에 의해 정해집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것은 재학중인 고등전문학교에 문의해주세요.</td></tr>
<tr><td>비 고</td><td>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장학금 제도(대여형)>
https://www.jasso.go.jp/shogakukin/seido/index.html</td></tr>
</table>

고등전문학교학생을 위한 제도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table>
<tr><td>내 용</td><td>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진학이 매우 곤란한 학생에 대해 진학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장학금을 교부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고등전문학교 3 학년에서 4 학년으로 진급 예정이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자[예약채용의 경우. 진급 후에도 재학채용이 있습니다.]
[전형기준]
가계 : 주민세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학생일 것.
학력 : 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일 것.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레포트 등으로 수학 의욕을 평가.</td></tr>
<tr><td>급부액</td><td>진학처의 학교설치자(국립, 공립, 사립) 및 통학형태(자택, 자택 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
<tr><td rowspan="2">설치자</td><td colspan="2">급부 월액</td></tr>
<tr><td>자택통학</td><td>자택외통학</td></tr>
<tr><td>국공립</td><td>17,500 엔
(25,800 엔)</td><td>34,200 엔</td></tr>
<tr><td>사립</td><td>26,700 엔
(35,000 엔)</td><td>43,300 엔</td></tr>
</table>
※생활보호세대이며 자택에서 통학하는 사람 및 아동양호시설 등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 안의 금액이 됩니다.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세대인 경우, 표 내용의 2／3 또는 1／3의 금액이 지급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고등전문학교 3 학년 봄</td></tr>
<tr><td>지급시기</td><td>진학후에 행하는 소정의 수속 완료 후</td></tr>
<tr><td>신청수속</td><td>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스카라넷)입니다.
필요서류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를 받은 후에 입력해주십시오.
※신청 입력 후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 제출이 필요합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것은 재학중인 고등학교에 문의해주십시오.</td></tr>
<tr><td>비고</td><td>▶진학처인 학교에서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예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주십시오.
▶급부형 장학금과 대출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급부장학금과 제 1 종(무이자)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제 1 종장학금의 대출 월액이 제한됩니다.
▶이 급부장학금에 채용된 분은, 학교가 실시하는 수업료 감면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수속 또한 진학처인 학교에서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장학금 제도（급부형）＞
https://www.jasso.go.jp/shogakukin/kyufu/index.html</td></tr>
</table>

제 8 편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하여

생활 보호법에 의한「진학준비 급부금」【지급】

내 용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의 아이가 대학등(특정 교육 훈련 시설)에 진학 할 때,신생활 시작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생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의 18 세에 달하는 날 이후의 최초 3 월 31 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아이 (그 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로 특정 교육 훈련 시설에 진학하는 분 ※특정교육훈련시설 ① 대학 (단기대학을 포함) ②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한함) ③ 직업능력 개발 종합대학교의 종합과정,직업능력 개발 대학교 및 직업능력 개발단기 대학교의 전문과정 ④ 수산대학교 ⑤ 해상기술 단기대학교 및 해기대학교 ⑥ 국립 간호 대학교 ⑦ 전수학교(일반과정에 한함)및 각종 학교 중 ,복지사무소가(수입등에 의해 자립가능한 전망이 있다고)판단하는 곳
지급액	자택통학 : 100,000 엔 자택외통학 : 300,000 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사무소에 제출 해 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 해 주십시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무이자대출】

<table>
<tr><td>내 용
(자금의
종류)</td><td>1 교육지원비 : 저소득세대의 자녀가 대학등에 취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공적 교육지원대출 제도※1」의 차입이 가능할 때까지 「츠나기자금※2」에서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1「공적 교육지원대출제도」는 다음①,②제도 입니다.
①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P.87~88)
②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무이자대출・급부) (P.90~94)
※2「츠나기 자금」은
※1의①,②는 대출이 4월이후 진행되는 점에서 납입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비는①,② 어느 한 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되기까지 「츠나기 자금」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①,② 대출을 받은 경우】원칙으로써, 입학년도 12월에 일괄상환(반제) 합니다.
【①,②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츠나기자금」이 아닌, 계속 대출해드립니다.
또한, ②의 대출만으로는 학비 납입이 부족한 경우 덧붙여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필요)
2 취학준비비 : 대학,단기대학,전문학교(전문과정) 입학 시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드립니다.</td></tr>
<tr><td>대상자</td><td>저소득세대(생활보호기준의 1.8배 이내 소득수준세대)의 자녀로
대학,단기대학,전수학교(전문과정)에 취학하는 분</td></tr>
<tr><td>대출금액</td><td>1 교육지원비 : 6개월 상한으로 월단위로 빌려드립니다. 단위 : 엔
<table>
<tr><td colspan="2">통학형태
대학종별</td><td colspan="2">대출한도액 (월액)</td></tr>
<tr><td colspan="2"></td><td>자택통학</td><td>자택외통학</td></tr>
<tr><td rowspan="2">대학</td><td>국공립</td><td>45,000</td><td>51,000</td></tr>
<tr><td>사 립</td><td>54,000</td><td>64,000</td></tr>
<tr><td rowspan="2">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td><td>국공립</td><td>45,000</td><td>51,000</td></tr>
<tr><td>사 립</td><td>53,000</td><td>60,000</td></tr>
</table>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기 대출한도액×1.5배를 상한으로 특별분으로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별분대출에서의 대출금액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p.6)의 대출상담창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2 취학준비금 : 학교종별등에 관계없이 500,000엔 이내</td></tr>
<tr><td>신청
(상담)
시기</td><td>※지망학교를 결정하고, 입학 팜플렛등에서 입학에 필요한 경비가 확인되는 시점 (고등학교 3학년 가을쯤부터) 에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6) 를 통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요.</td></tr>
<tr><td>상환기간</td><td>1 교육지원비 : 「츠나기자금」은 원칙으로써, 입학후 12월에 일괄상환(반제), 그외는 졸업후 3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대출기간의 3배이내 (특별분은 4배 이내 (단 최대 20년으로 함)) (P.74 과 같음)
2 취학준비비 : 졸업후 3개월 이내 거치기간 후 8년 이내</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사회복지협의회 (P.6) 로 문의 해 주십시요.</td></tr>
<tr><td>비 고</td><td></td></tr>
</table>

대학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출금「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무이자대출】

<table>
<tr><td>내 용</td><td>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의 자녀가 대학 등에 수학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입학금, 수업료, 서적대, 교통비 등) 을 빌려드립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를 제외함) 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혹은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다음년도 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 또는 일반과정)에 진학할 예정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동종의 자금대출을 신청 한 경우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종의 자금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십시요.</td></tr>
<tr><td>대출액</td><td>○수학자금 월액한도액 단위 : 엔
<table>
<tr><td colspan="3">학년별 / 학교종별</td><td>1 학년</td><td>2 학년</td><td>3 학년</td><td>4 학년</td><td>5 학년</td></tr>
<tr><td rowspan="4">전수학교(전문과정)
단기대학</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 통학</td><td>67,500</td><td>67,500</td><td></td><td></td><td></td></tr>
<tr><td>자택외 통학</td><td>76,500</td><td>76,50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사 립</td><td>자택 통학</td><td>79,500</td><td>79,500</td><td></td><td></td><td></td></tr>
<tr><td>자택외 통학</td><td>90,000</td><td>90,00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대학</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 통학</td><td>67,500</td><td>67,500</td><td>67,500</td><td>67,500</td><td></td></tr>
<tr><td>자택외 통학</td><td>76,500</td><td>76,500</td><td>76,500</td><td>76,500</td><td></td></tr>
<tr><td rowspan="2">사 립</td><td>자택 통학</td><td>81,000</td><td>81,000</td><td>81,000</td><td>81,000</td><td></td></tr>
<tr><td>자택외 통학</td><td>96,000</td><td>96,000</td><td>96,000</td><td>96,000</td><td></td></tr>
<tr><td>전수학교(일반과정)</td><td colspan="2">학교종별・통학형태에 관계없음</td><td>48,000</td><td>48,000</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대학원</td><td colspan="2">석사과정</td><td>132,000</td><td>132,000</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박사과정</td><td>183,000</td><td>183,000</td><td>183,000</td><td></td><td></td></tr>
</table>
○ 취학준비자금 한도액 단위 : 엔
<table>
<tr><td rowspan="4">대학
단기대학
전수학교 (전문과정)
입학</td><td rowspan="2">국공립</td><td>자택통학</td><td>370,0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380,000</td></tr>
<tr><td rowspan="2">사 립</td><td>자택통학</td><td>580,0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590,000</td></tr>
<tr><td colspan="2" rowspan="2">전수학교 (일반과정) 입학</td><td>자택통학</td><td>150,000</td></tr>
<tr><td>자택외통학</td><td>160,000</td></tr>
<tr><td rowspan="2">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에 입학</td><td>국공립</td><td colspan="2">380,000</td></tr>
<tr><td>사 립</td><td colspan="2">590,000</td></tr>
</table></td></tr>
<tr><td>**신청(상담)시기**</td><td>**대출 관련 상담은 진로를 검토하는 시기부터 접수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지역 부(府)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요.</td></tr>
<tr><td>대출시기</td><td>대출결정 후 , 차용서 제출 확인 후 계좌이체</td></tr>
</table>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다음의 증명서류들을 첨부하여, 거주 지역의 부(府)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①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 증명서 ② 세대전원의 주민표 (기재사항에 생략이 없는 것) ③ 인감등록증명서 ④ 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 소득증빙서류 ⑥ 재학(적) 증명서 (수학자금인 경우) 합격통지서 (취학지도자금인 경우) ⑦ 학교안내서 혹은 납입통지서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해 주십시요.
비 고	동종자금은, 다음①~②와 같습니다. ① 생활복지자금대출금 (교육지원자금) **대출** (P.74) ②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 **대출** (P.81～82)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고등교육의 수업료 등 감면

<table>
<tr><td>내 용</td><td>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주민세비과세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2020 년도 재학생(이미 입학한 학생을 포함)이 대상)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의 급부장학금 대상이 된 분은 본 제도의 대상도 됩니다.</td></tr>
<tr><td>감면액</td><td>수업료 등 감면 상한액(년액)(주민세비과세 세대 학생)
<table>
<tr><td></td><td colspan="2">국공립</td><td colspan="2">사립</td></tr>
<tr><td></td><td>입학금</td><td>수업료</td><td>입학금</td><td>수업료</td></tr>
<tr><td>대학</td><td>약 280,000 엔</td><td>약 540,000 엔</td><td>약 260,000 엔</td><td>약 700,000 엔</td></tr>
<tr><td>단기대학</td><td>약 170,000 엔</td><td>약 390,000 엔</td><td>약 250,000 엔</td><td>약 620,000 엔</td></tr>
<tr><td>고등전문학교</td><td>약 80,000 엔</td><td>약 230,000 엔</td><td>약 130,000 엔</td><td>약 700,000 엔</td></tr>
<tr><td>전문학교</td><td>약 70,000 엔</td><td>약 170,000 엔</td><td>약 160,000 엔</td><td>약 590,000 엔</td></tr>
</table>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학생은, 상기 감면액의 2 / 3 또는 1 / 3 의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대학 등에 진학 후 4 월경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감면기간</td><td>학교에 감면을 신청하고, 학교에서 감면인정결과 통지가 있은 후
(학교에 따라 상이하므로, 각 학교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통학예정인(재학중인) 대학 등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문부과학성 홈페이지〈고등교육의 수학지원신제도〉
URL:https://www.mext.go.jp/kyufu/</td></tr>
</table>

대학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장학금【대출】

<table>
<tr><td>내 용</td><td>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취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대출합니다.
○ 장학금 종류
1 제 1 종 장학금 (무이자대출) ・・・학력기준 (고등학교 성적 3.5 이상), 가계기준등을 충족하는 분
2 제 2 종 장학금 (유이자대출) ・・・학력기준,가계기준(제 1 종장학금 보다 완화)을 충족하는 분
→ 상기 1 또는 2 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만 대상 (입학 일시금으로)
3 입학시 특별증액대출 장학금 (유이자대출) ・・・ 일본정책금융공고「국가교육론」를 이용할수 없는 분
※2019 년도의 주민세(소득할)이 비과세,생활보호 수급중,아동 양호 시설등의 입소자로 진학후에도 뛰어난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면 학력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예약채용】
대학 (학부),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으로, 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분</td></tr>
<tr><td>대출액</td><td>1 제 1 종 장학금 (무이자)
생계유지자의 연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분(기준: 본인, 아버지, 어머니 및 중학생 4 인세대로 연수입 686 만엔을 넘는 경우)는 각 구분에서 가장 높은 대출 월액 이외의 금액에서 선택해야 합니다(굵은 외곽선 부분).
<table>
<tr><td rowspan="2">진학처</td><td colspan="2">국・공립</td><td colspan="2">사 립</td></tr>
<tr><td>자택통학</td><td>자택 외 통학</td><td>자택통학</td><td>자택 외 통학</td></tr>
<tr><td rowspan="5">대학</td><td rowspan="3">45,000</td><td>51,000</td><td>54,000</td><td>64,000</td></tr>
<tr><td rowspan="2">40,000</td><td rowspan="2">40,000</td><td>50,000</td></tr>
<tr><td>40,000</td></tr>
<tr><td>30,000</td><td>30,000</td><td>30,000</td><td>30,000</td></tr>
<tr><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r>
<tr><td rowspan="5">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td><td>45,000</td><td>51,000</td><td>53,000</td><td>60,000</td></tr>
<tr><td rowspan="2">30,000</td><td rowspan="2">40,000</td><td rowspan="2">40,000</td><td>50,000</td></tr>
<tr><td>40,000</td></tr>
<tr><td></td><td>30,000</td><td>30,000</td><td>30,000</td></tr>
<tr><td>20,000</td><td>20,000</td><td>20,000</td><td>20,000</td></tr>
</table>
▶원칙 매월 계좌이체</td></tr>
</table>

○제 2 종 장학금 (이자 포함)

진학처	대여 월액
	국・공・사립 / 자택・자택 외 통학 공통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4 ・ 5 학년) 전수학교 (전문과정)	20,000 엔 ~ 120,000 엔 중 10,000 엔 단위 중에서 선택

▶원칙 매월 계좌이체

3 입학시 특별증액대출 장학금

학교종별	입학시 특별증액 대출액
	국・공립 / 자택・자택외 통학 공통
대 학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	100,000 엔 200,000 엔 300,000 엔 400,000 엔 500,000 엔 중 선택

▶ 제 1 종 장학금 또는 제 2 종 장학금의 첫회계좌이체시, 병합하여 이체

※ 제 1 종 장학금 또는 제 2 종 장학금 신청자가 대상.
입학시 특별증액대출장학금 만의 신청은 불가

신청 시기 및 대출 시기

	장학금구분	신청 (모집) 시기	대출 시기
예약채용 (입학전 신청)	제 1 종 장학금 제 2 종 장학금 입학시특별증액대출 장학금	고교 3 학년 여름 (자세한 시기는 학교에 확인해주세요.)	5 월 또는 6 월 경
재학채용 (입학후 신청)	제 1 종 장학금 제 2 종 장학금 입학시특별증액대출 장학금	입학후 봄	6 ~ 8 월 경

반환 시기

대출 종료 후, 7 개월째 되는 달부터 상환이 시작됩니다.
제 1 종 장학금은 다음 ①、②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제 2 종 장학금은 ①의 방식으로 반환됩니다.
①정액반환방식 : 대출총액에 의해 반환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대 20 년)
②소득연동반환방식 : 전년도 소득과 연동해서 반환월액이 정해지고, 반환 기간은 반환 월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보증 제도	「인적보증」또는 「기관보증」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인적보증 선택・・・연대보증인과 보증인 각 1 명 필요 ② 기관보증 선택・・・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이 불필요 보증료는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에서 차감합니다.
문의처	【예약채용】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전수학교 (고등과정) 【재학채용】재학하고 있는 대학,단기대학,전수학교 (전문과정)
비 고	**▶대학원은 별도기준이 있습니다.** **▶예약채용을 하신 분은 통학처의 학교에서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예약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수학교에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을 취급하지 않는(기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경우가 있습니다. 취급하고 있는지 반드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 <장학금 제도 (대여형)> URL:https://www.jasso.go.jp/shogakukin/seido/index.html

대학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독립행정법인일본학생지원기구 장학금【급부】

<table>
<tr><td>내 용</td><td>의욕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에 의해 진학이 매우 곤란한 학생에게 진학을 후원할 목적으로써 반환 필요가 없는 급부장학금을 교부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대학(학부), 단기대학, 전수학교(전문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 학년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일본학생지원기구의 선고에 의해 채용된 자 (예약채용의 경우. 진학 후에도 재학채용이 있습니다.)
〔전형기준〕
가계 : 주민세비과세 세대 및 그에 준하는 세대의 학생일 것.
학력 : 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일 것. 성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레포트 등으로 수학 의욕을 평가.</td></tr>
<tr><td>급부액</td><td>진학처의 학교설치자(국립, 공립, 사립) 및 통학형태(자택, 자택 외)에 따라 다릅니다.
<table>
<tr><td rowspan="2">설치자</td><td colspan="2">급부 월액</td></tr>
<tr><td>자택통학</td><td>자택 외 통학</td></tr>
<tr><td>국공립</td><td>29,200 엔
(33,300 엔)</td><td>66,700 엔</td></tr>
<tr><td>사립</td><td>38,300 엔
(42,500 엔)</td><td>75,800 엔</td></tr>
</table>
【통신교육과정】
<table>
<tr><td rowspan="2">설치자</td><td colspan="2">급부액</td></tr>
<tr><td>자택통학</td><td>자택 외 통학</td></tr>
<tr><td>국공립</td><td colspan="2" rowspan="2">51,000 엔
(연 1 회 지급)</td></tr>
<tr><td>사립</td></tr>
</table>
※생활보호세대이며 자택에서 통학하는 사람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통학하는 사람은 ( ) 안의 금액이 됩니다.
※주민세비과세 세대에 준하는 세대인 경우, 표의 2/3 혹은 1/3 의 금액이 지급됩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고등전문학교 3 학년 봄</td></tr>
<tr><td>지급시기</td><td>진학후에 행하는 소정의 수속 완료 후</td></tr>
</table>

신청수속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스카라넷)입니다. 필요서류 를 학교에 제출하고, 신청에 필요한 식별번호를 받은 후에 입력해주십시오. ※신청입력 후, 본인과 생계유지자의 마이넘버 제출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것은 재학중인 고등학교 혹은 전수학교(고등과정)에 문의해주십시오.。
비 고	▶진학처인 학교에서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예약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주십시오. ▶급부형 장학금과 대출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급부장학금과 제 1 종(무이자)장학금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제 1 종장학금의 대출월액이 제한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일본학생지원기구 급부장학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급부장학금 대상인지를 반드시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문의해주세요. ▶이 급부장학금에 채용된 분은, 진학처가 실시하는 수업료 감면 등의 대상이 됩니다. 이 수속 또한 진학 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학생지원기구 홈페이지＜장학금 제도（급부형）＞ https://www.jasso.go.jp/shogakukin/kyufu/index.html

제 9 편 중학교 · 고등학교(특별지원학교 포함) 등, 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생업부조(기능습득비)」【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수학교 등에서 기술을 수득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세대의 자립 조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수업료, 교과서・교재 구입비, 통학비 등)를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의 자녀로서, 다음①~②의 시설 중 한 곳에 재학하고있는 분
① 전수학교
② 각종학교</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생업부조」
<table>
<tr><th></th><th>내 용</th><th>지급액</th></tr>
<tr><td rowspan="2">기능습득비</td><td>수업료, 교과서, 교재비, 자격검정 등 비용(단, 동일 자격검정 등은 1 회 한정) 등</td><td>년 380,000 엔 이내</td></tr>
<tr><td>통학 교통비 (통학에 필요한 최소한도액)</td><td>실비 지급</td></tr>
</table></td></tr>
<tr><td>신청시기
지급시기
신청수속</td><td>※ 전수학교 등에의 입학을 검토하는 경우,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5) 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 바로 취학하는 경우에는 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취업준비비)」【지급】

<table>
<tr><td>내 용</td><td>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 취업이 확정되었을 때, 준비에 필요한 경비(취업을 위한 의복・신발 구입비 등) 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으로 취업이 확정된 분</td></tr>
<tr><td>지급액</td><td>○생활보호법「생업부조」
<table>
<tr><td></td><td>내 용</td><td>지급액</td></tr>
<tr><td rowspan="2">취업준비비</td><td>취업을 위해 직접 필요한 양복류, 신발 등의 구입비용</td><td>32,000 엔 이내</td></tr>
<tr><td>첫임금이 지급되기까지 통근비
(꼭 필요한 경우)</td><td>실비지급</td></tr>
</table></td></tr>
<tr><td>신청시기
지급시기
신청수속</td><td>※ 취업이 확정되면 즉시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5) 에 상담하여 주십시요.</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복지사무소 (P.5) 에 문의하여 주십시요.</td></tr>
<tr><td>비 고</td><td></td></tr>
</table>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4 월 1 일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기능습득자금・입소준비금【지급】

<table>
<tr><td>내 용</td><td>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기능습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에게,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자녀로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 졸업 후, 계속하여 기능습득시설(간호사 ・ 준간호사 양성소를 제외)에 입소하는 경우, 다음①,②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
①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자녀
②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능습득이 곤란한 세대의 자녀
(소속세대 총수입이 생활보호기준의 1.8 배 이내)
▸ 생활보호의 기준은 거주지역이나 세대구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td></tr>
<tr><td>지급액</td><td>
<table>
<tr><th colspan="2">시설 종별</th><th>기능습득자금</th><th>입소준비비</th></tr>
<tr><td>1</td><td>공공취업능력개발시설
(교토후립의 고등기술전문학교 등)</td><td>월액 5,000 엔</td><td rowspan="3">55,000 엔</td></tr>
<tr><td>2</td><td>실기학교
(전수학교등・각종 학교)</td><td>월액 24,000 엔</td></tr>
<tr><td>3</td><td>고교형태 (고등학교와의 연계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 수득 시설 등)</td><td>월액 21,000 엔</td></tr>
</table>
※생활보호법에의한 업부조「기능습득비」(P.96) ,「취업준비비」(P.97)
및「고등교육의 수업료 등 감면」 (P.89) 등,타 유사 제도의 의한 급부 등을 수급하는 경우는, 지급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td></tr>
<tr><td>신청시기</td><td>▸1 차 신청・・・3 월 중순
▸2 차 신청・・・4 월 중순
이후, 수시접수</td></tr>
<tr><td>지급시기</td><td>【기능습득자금】년 3 회로 나누어 지급
제 1 기분 : 4 월 하순 (1 차 신청분) 、 5 월 하순 (2 차 신청분)
제 2 기분 : 8 월상순
제 3 기분 : 12 월상순
수시접수분은, 그때마다 지급합니다.
【입소준비금】4 월에서 6 월 사이에 전액지급</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재학(적)증명 및 납입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2) 에 제출 해 주십시요.</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부(府)보건소 (P. 2) 에 문의하여 주십시요.</td></tr>
<tr><td>비 고</td><td>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td></tr>
</table>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훈련수당・입교준비금【지급】

<table>
<tr><td>내 용</td><td>장애가 있는 분 등이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에서 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기간, 훈련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 부내(府) 시설・・・각부립고등기술전문교, 폴리텍센터 교토
부외(府) 시설・・・국립・현립 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 등
▸ 지급대상이 아닌 훈련과도 있습니다.</td></tr>
<tr><td>대상자</td><td>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등의 구직자로서,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서 수강지시를 받은 분</td></tr>
<tr><td>지급액</td><td>
<table>
<tr><th colspan="3">수당등 종류</th><th>지급액</th><th>내 용</th></tr>
<tr><td rowspan="4">훈련수당</td><td colspan="2">기본수당</td><td>월액 3,530 엔～4,310 엔</td><td rowspan="2">훈련을 수강하는 기간의 일수에 따라 지급</td></tr>
<tr><td rowspan="2">기능습득수당</td><td>통소수당</td><td>월액 42,500 엔 이내</td></tr>
<tr><td>수강수당</td><td>일액 500 엔
(상한 40 일)</td><td>훈련을 받은 일수에 따라 지급</td></tr>
<tr><td colspan="2">기숙수당※</td><td>월액 10,700 엔 이내</td><td>기숙하는 시기의 일수에 따라 지급</td></tr>
<tr><td colspan="3">입교준비금</td><td>35,000 엔</td><td>6 개월이상 훈련을 받는 신규 대졸의 장애자만 지급</td></tr>
</table>
※ 기숙수당・・・생계를 유지해온 분이 생계를 함께 한 동거가족과 떨어져 기숙하며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급
</td></tr>
<tr><td>신청시기</td><td>입교시</td></tr>
<tr><td>지급시기</td><td>익월 15 일</td></tr>
<tr><td>신청
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훈련수강지시서의 사본, 신체장애인수첩, 요육수첩,정신장애인수첩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시설에 제출해 주십시요.
▸ 신청서는 시설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요.</td></tr>
<tr><td>비고</td><td></td></tr>
</table>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장애인 등 직장적응 훈련수당【지급】

<table>
<tr><td>내 용</td><td>장애가 있는분 등이 직장적응훈련을 받는 기간(상한있음),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직장적응훈련은 장애가 있는분 등이 실제 직장에서 작업에 대해 훈련을 하고, 그것에 의해 작업환경과 직장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용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td></tr>
<tr><td>대상자</td><td>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의 구직자로 공공 직업 안정소 (hello work) 에서 수강 지시를 받은 자</td></tr>
<tr><td>지급액</td><td>
<table>
<tr><th colspan="2">훈련 종류・훈련기간</th></tr>
<tr><td>1</td><td>일반직장적응훈련
6 개월(중도장애인등은 1 년) 이내</td></tr>
<tr><td>2</td><td>단기직장적응훈련
2 주간(중도장애인등은 4 주간) 이내</td></tr>
</table>
<table>
<tr><td>○기본수당</td><td>일액 3,530 엔 ～ 4,310 엔</td></tr>
<tr><td>○기능습득수당
수강수당</td><td>일액 500 에
(상한 40 일)</td></tr>
<tr><td>통소수당</td><td>월액 42,500 엔 이내</td></tr>
</table>
</td></tr>
<tr><td>신청시기</td><td>수시</td></tr>
<tr><td>지급시기</td><td>1 일반직장적응훈련・・・1 개월종료후
2 단기직장적응훈련・・・훈련종료후
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일 다음달</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공공직업안정소(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td></tr>
</table>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모자・부자・과부 지자금대출금「취업자금」「취업준비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의 자녀가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 제외) 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혹은 부자가정의 아버지로 「취업자금」또는 「취업준비금」이 필요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분 1 취업자금・・・사업 개시 또는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을 습 득하기 위한 자금 2 취업준비자금・・・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복, 신발 등 복장 정돈을 위한 자금
대출액	1 취업자금 월액 68,000 엔 이내 2 취업준비자금 1 회 당 100,000 엔 이내
신청시기	대출관련 상담은 진로검토시기부터 접수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지역 부(府)보건소에 상담하여 주십시요.
대출시기	대출결정 후 , 차용서 제출 확인 후 계좌이체
상환시기	1 취업자금 지식기술습득부터 1 년경과후 2 취업준비자금 대출일부터 1 년 조치기간후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①~⑧의 증명을 첨부하여 거주지역 부(府)보건소에 제출 해 주십시요. ① 호적등본 또는 호적기재사항증명서 ② 세대전원 주민표 (기재사항이 생략이 없는 것) ③ 인감등록증명서 ④ 부양 사실에 대한 증명서 ⑤ 소득 증빙 서류 ⑥ 재학(적) 증명서 ⑦ 시설안내서 혹은 납입통지서 등 이수 연한이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교 3 학년생이 자동차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취직 내정서와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교장이 증명하는 서류) ⑧소정의 계약서 겸 동의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배부하고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의 부(府)보건소 (P.2)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 고	

※표 안의 금액은 2020 년 3 월 기준의 금액이며,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간호사 등 수학자금【무이자대출】

<table>
<tr><td>내 용</td><td>간호사 등의 양성시설에 재학 중이며, 장래 교토부내의 의료기관에서의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취학이 곤란한 분에게 수학자금을 빌려 드립니다.</td></tr>
<tr><td>대상자</td><td>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및 준간호사의 양성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분으로, 양성시설을 졸업 후 1 년이내 간호사등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교토부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등의 업무에 종사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
※다른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요.</td></tr>
<tr><td>대출액</td><td><table>
<tr><th>과 정</th><th>국・공립양성시설재학생</th><th>사립양성시설재학생</th></tr>
<tr><td>보건사・조산사・간호사
(5 년일관 4 , 5 학년)</td><td>월액 32,000 엔</td><td>월액 36,000 엔</td></tr>
<tr><td>준간호사
(5 년일관 1 ~ 3 학년)</td><td>월액 15,000 엔</td><td>월액 21,000 엔</td></tr>
</table></td></tr>
<tr><td>신청시기</td><td>매년 4 월 ~ 5 월</td></tr>
<tr><td>대출시기</td><td>년 4 회 (7 월, 9 월,12 월, 3 월)</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①~③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양성시설에 제출하여 주십시요. (단,교토부외의 양성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분은,교토부청 건강복지부에 직접 제출하여 주십시요.)
① 재학증명서 겸 추천서
② 소득증명서등의 제출서약서 겸 소득・재산조사등 동의서
③ 교토부 간호사등 수학자금 신청조서
용지는 부(府)내 양성시설 또는 교토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td></tr>
<tr><td>연대보증인</td><td>2 명 (그 중 1 명은 교통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td></tr>
<tr><td>상환기간</td><td>일괄상환 혹은 대출기간 내 분할상환</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교토부청 건강복지부 의료과 (TEL075-414-4746 또는 47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 고</td><td>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시설의 졸업일로부터 1 년이내에 간호사 등의 면허를 취득하고, 바로 교토부내 반환면제대상시설※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5 년간 간호사 등으로서 종사한 경우
※반환면제대상시설 (2020.3.31 시점※취직 시점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토부 북부지역(아야베시 이북)의 전 병원, 교토부내의 병상이 200 개 미만인 병원, 교토부내의 정신병상이 전체의 80% 이상인 병원, 교토부내의 전 진료소, 중도 심신 장해아 시설, 구 국립진료소, 소개노인보건시설. 방문 간호 사업소간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의료원</td></tr>
</table>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개호복지사 등 수학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간호복지사 등의 양성시설에 재학 (입학하려고) 하고 있고, 장래,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분에게 수학자금 등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정양성시설에 재학 (입학) 하여, 졸업 후,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타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대출액	1 수학자금 월액 50,000 엔 2 입학준비금 200,000 엔 3 취직준비금 200,000 엔 (일하면서 취학하는 분은 제외) 4 국가시험 수험 대책비용 1 년 당 40,000 엔 (간호복지사 양성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분에 한함) 생활보호수급세대 등인 분에게는 상가의 대출액에 별도의 생활비 가산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매년 4 월 ~ 5 월
대출시기	년 2 회 (4 월, 10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①~④의 증명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양성시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수급세대의 고등학생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 됩니다.) ① 학교성적증명서 ③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④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연대보증인의 것 ④ 그 외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수급세대인 분은,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TEL 075-252-6292) 에 문의해 주세요.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법정대리인)
상환기간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075-252-6292)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시설의 졸업일로부터 1 년이내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5 년간 종사한 경우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보육사 수학 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간호복지사 등의 양성시설에 재학 (입학하려고) 하고 있고, 장래,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 취직을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 성적이 우수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취학이 곤란한 분에게 수학자금 등을 빌려 드립니다.
대상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정양성시설에 재학 (입학) 하여, 졸업 후,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타 장학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해 주세요.
대출액/지급액	1 수학자금 월액 50,000 엔 2 입학준비금 200,000 엔 3 취직준비금 200,000 엔 (일하면서 취학하는 분은 제외) 생활보호수급세대 등인 분에게는 상기의 대출액에 별도의 생활비 가산이 있습니다.
신청시기	해마다 신청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교토 부사회 복지 협의회 (075-252-6292) 에 문의 바랍니다.
지급시기	연간 2 회 (4 월, 10 월)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다음의 ①~④의 증명을 첨부하여, 재학하고 있는 양성시설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수급세대의 고등학생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 됩니다.) ① 학교성적증명서 ②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③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④ 그 외 필요한 서류 ※생활보호수급세대인 분은,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075-252-6292) 에 문의해 주세요.
연대보증인	2 명 (그 중 1 명은 법정대리인)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교토부 사회복지협의회 (075-252-6292)로 문의해 주세요.
비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시설의 졸업일로부터 1 년이내에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교토부내의 복지시설에서 간호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5~10 년간 종사한 경우

참고자료

자녀 양육자를 위한 제도

아동수당【지급】

<table>
<tr><td>내 용</td><td>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께 지급합니다.</td></tr>
<tr><td>대상자</td><td>중학교 졸업 전 (15 세 생일 후의 첫 3 월 31 일까지) 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td></tr>
<tr><td>지급액</td><td>양육자의 소득 및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소득제한액 미만인 분
<table>
<tr><th colspan="2">자녀 연령</th><th>아동수당 금액
(1 인당 월액)</th></tr>
<tr><td colspan="2">0 세~3 세 미만 (일률)</td><td>15,000 엔</td></tr>
<tr><td colspan="3">3 세 ~ 소학교 수료 전</td></tr>
<tr><td rowspan="2"></td><td>제 1 자(第 1 子)・
제 2 자(第 2 子)※</td><td>10,000 엔</td></tr>
<tr><td>제 3 자(第 3 子) 이후※</td><td>15,000 엔</td></tr>
<tr><td colspan="2">중학생 (일률)</td><td>10,000 엔</td></tr>
</table>
※「제 3 자(第 3 子) 이후」는 고교졸업까지 (18 세 생일 후의 첫 3 월 31 일까지) 양육하고 있는 자녀 중 셋째 자녀 이후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 소득제한액 이상인 분
자녀 1 인당 월액 5,000 엔 (일률)</td></tr>
<tr><td>신청시기</td><td>수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부모가 되었을 때 등)</td></tr>
<tr><td>지급시기</td><td>6 월(2~5 월분), 10 월(6~9 월분), 2 월(10 월~1 월)</td></tr>
<tr><td>신청수속</td><td>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각 시정촌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문의처</td><td>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P.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경우, 근무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비고</td><td>1 원칙적으로, 자녀가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유학으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2 부모가 이혼 협의 중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자녀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3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가 일본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을 지정하면, 그 분(부모지정자)에게 지급합니다.
4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 후견인에게 지급합니다.
5 자녀분이 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경우 혹은 수양부모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자 혹은 수양부모에게 지급합니다.</td></tr>
</table>

편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

아동부양수당【지급】

내 용	편부모 가정의 자녀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국민 연금의 1 급 장애 정도의 중증 장애 상태에 있는 가정의 자녀가 심신이 건강하게 성정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생활의 안정과 자립의 촉진을 위해, 자녀의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편부모 가정의 자녀 (18 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를 감호・양육하고 있는 분 ※ 자녀에게 중도 이상(中度、重度)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 세 미만까지
지급액	감호・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에 따라, 지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월액 10,180 엔 ~ 월액 43,160 엔 둘째 자녀는 월액 5,100 엔 ~ 10,190 엔 가산, 셋째 자녀 이후에는 월액 3,060 ~ 6,110 엔 가산 (2020 년 4 월 1 일 현재. 물가변동에 의해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5 월(3,4 월분), 7 월(5,6 월분), 9 월(7,8 월분),11 월(9,10 월분), 1 월(11,12 월분) , 3 월(1 , 2 월분)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각 시정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P.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장애아 가정을 위한 제도

특별 아동부양수당【지급】

내 용	신체 또는 정신에 중정도(中程度) 이상의 장애가 있는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감호하고 있는 부(父) 혹은 모(母)에게 지급합니다. (외국인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중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는 20 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감호하고 있는 분
지급액	1 급 : 월액 52,500 엔 2 급 : 월액 34,970 엔 (2020 년 4 월 1 일 현재. 물가변동에 의해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호・양육하고 있는 분의 소득에 따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녀분의 장애와 관련하여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아동 입소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8 월(4~7 월분),12 월(8~11 월분), 4 월(12 월~3 월분)
신청수속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 시정촌(市町村)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신청서는 각 시정촌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 시정촌(P.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중증 장애로 인해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20 세 미만인 분을 위한 제도

장애아 복지수당【지급】

내 용	중증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있어 상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에게 지급합니다.
대상자	20 세 미만인 분으로, 별표의 어느 쪽에라도 해당하는 분 ①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 ②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아 입소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분 ③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의무자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분 〈별표〉 1 양쪽 눈 시력의 합이 0.02 이하인 분 2 양쪽 귀의 청력이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소리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 3 양 팔의 기능에 두드러진 장애를 갖고 있는 분 4 양 손의 모든 손가락이 없는 분 5 양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분 6 양쪽 대퇴(넓적다리)의 2 분의 1 이상을 잃으신 분 7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 8 1~7 번의 내용 이외에, 신체 기능의 장애 및 장기간에 걸친 안정을 필요로 하는 병세가 1~7 번의 내용과 동정도(同程度)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분 9 정신장애로, 1~8 번의 내용과 동정도(同程度)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분 10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병세 혹은 정신 장해가 중복된 경우로, 그 상태가 1~9 번의 내용과 동정도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분
지급액	월액 14,880 엔 (지급액은 물가변동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시기	수시
지급시기	2 월(11~1 월분), 5 월(2~4 월분), 8 월(5~7 월분), 11 월(8 월~10 월분)
신청수속	인정(認定) 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신청창구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용지는 아래의 신청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창구: 교토시 거주자 — 구약소(출장소) 복지사무소 신청창구: 그 외 지역 거주자 — 시약소 신청창구: 정촌(町村) 거주가 — 정촌약소(町村役場)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시・구(정촌(町村)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소관의 부(府)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장해로 인해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20 세 미만인 분을 위한 제도

모자 복지단체 소액 대출자금【무이자대출】

내 용	모자세대 및 과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교토부 모자・과부복지연합회가 각 지회에 있어 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요한 소액자금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자	교토부내 (교토시는 제외)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의 어머니 및 과부
지급액	○ 생활자금 한도액 50,000 엔 ○ 취학자금 한도액 50,000 엔 ○ 주택자금 한도액 50,000 엔
대출시기	수시
대출수속	거주 중인 지역의 교토부 모자・과부연합회의 지회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교토부 모자・과부복지연합회 (TEL 075-223-1360)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비고	

□각 제도 본청 담당과

제 1 편 영・유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8	모가가정 장학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9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부민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추진과 075-414-5076
10	셋째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보조금	건강복지부 어린이・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727
11	취학장려비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제 2 편 초등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13	생활보호법에 의한「생활부조(일시부조)」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14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제 3 편 초등학생을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16	모자가정 장학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7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등	부민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추진과 075-414-5076
18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생활부조(일시부조)」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19	취학원조비	교육청 지도부학교교육과 075-414-5831
20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급 등)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21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22	사립중학교 등 수학지원금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23	수학여행원조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24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	

제 4 편　중학교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26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 (일시부조)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27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취학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제 5 편　중학생을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29	모가가정 장학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30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부민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추진과 075-414-5076
31	생활보호법에 의한「교육부조」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32	취학원조비	교육청지도부 학교교육과 075-414-5831
33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급 등)	교육청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34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35	사립중학교 등 수학지원금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36	수학여행 원조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37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수학원조	

제 6 편　고등학교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39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원조)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40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43	생활복지자금 대출금 「교육지원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05・4556
44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취학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46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8
48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준비금)	

제 7 편　고등학생등을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5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고등학교등 취학비)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54	고등학생 급부형 장학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57	장학을 위한 급부금 (고등학생등 장학 급부금)	국공립고교 :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39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58	모자가정 장학금등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59	교통사고 유족아동 장학금 등	부민환경부 안심・안전 마치즈쿠리추진과 075-414-5076
61	취학장려비 (특별지원학교)	교육청 지도부 특별지원교육과 075-414-5835
63	고등학교 학생통학비 보조금	공립고교 : 교육청지도부고교교육과 075-574-7516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문교과 075-414-4517
65	정시제과정 교과서 및 통신제과정 교과서・학습서 보조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6
66	정시제과정 및 통신제과정 수학장려금	공립고교 : 교육청지도부고교교육과 075-574-7516 사립고교 : 교토부청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7
67	공립고교 취학지원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574-7516
69	고등학교등 취학지원금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6
71	사립고등학교 안심수학지원사업	
72	효고현 사립고등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비경감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7
73	사립고등학교 전공과 수학지원금	문화스포츠부 문교과　075-414-4518
74	생활복지자금대출금「교육지원자금 (교육지원비)」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05・4556
75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수학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76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금)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78	고등학생등 수학지원사업 (수학준비금)	075-574-7518
80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414-5849

제 8 편 대학등 입학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85	생활보호제도에 의한「진학준비급부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86	생활복지자금대출금 「교육지원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605・4556
87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수학자금」「취학준비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89	고등교육 수업료 등 면제	교육청 지도부 고교교육과 075-414-5849

제 9 편 취업준비를 위한 제도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96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기능습득비) 」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4・4558
97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부조 (취업준비비) 」	
98	기능습득자금・입소준비금	
99	훈련수당・입소준비금	상공노동관광부 인재개발추친과 075-414-5101
100	장애인등 직장적응훈련수당	상공노동관광부 인재확보추진실 075-682-8918
101	모자・부자・과부 복지자금 대출금 「취업자금」「취업준비자금」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02	간호사등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의료과 075-414-4746・4754
103	개호복지사 등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지역복지추진과 075-414-4561
104	보육사 수학자금	건강복지부 어린이・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81

참고자료

페이지	제 도 명	본청담당과
106	아동수당	건강복지부 어린이・청소년종합대책실 075-414-4581
107	아동부양수당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108	특별 아동부양수당	
109	장애아 복지수당	건강복지부 장애자지원과 075-414-4606
110	모자복지단체 소액자금대출	건강복지부 가정지원과 075-414-4585

☆ **이 책자는 자유롭게 복사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합니다.**
교토부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페이지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도 취학 및 진학・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호제도 일람
2020 년 3 월 발행

편집・발행 교토부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도부 학교교육과 인권교육실)